

政策研究 90-09

多者間 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1990. 10

張 義 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多者間 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張 義 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最近에 國際交易에서 나타나고 있는 注目할 現象은 金融, 정보, 통신, 전문서비스 등 生産 및 企業活動에서 중요한 役割을 하는 商業서비스 (business service) 의 國際去來가 급속하게 增加하는 趨勢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商業서비스의 供給에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美國, EC, 日本 등 先進國들은 서비스交易의 擴大 및 自由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는 Uruguay Round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積極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國際競爭에 크게 露出되지 않고 保護되어 왔으나 技術, 資金力 등의 不足으로 先進國에 비해서 競爭力이 크게 脆弱한 實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교역의 擴大는 많은 企業의 倒産과 失業의 發生 그리고 先進國 多國籍企業의 國內市場 蠶食 및 支配를 초래할 것으로 憂慮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교역의 확대와 自由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國際化를 促進하고 交易의 利點을 活用할 수 있는 좋은 機會를 提供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選擇해야될 基本的인 方向은 무엇인가. 交易의 利點을 犧牲하더라도 國內企業들이 競爭力을 갖출 때 까지 國內시장을 보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外國기업의 國內시장 蠶食이라는 危險負擔을 하더라도 交易을 擴大하고 國際化를 推進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過去 經驗은 이에 대해서 많은 示唆을 하고 있다.

韓國經濟의 成長과 發展의 原動力은 國內시장의 보호보다는 위험부담을 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進出한 進취적인 企業家 精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시장을 開拓하고 新製品을 開發하며 선진국의 企業 및 소비자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은 促進되었다. 이처럼 過去 한국경제는 교역의 이점을 活用함으로써 高度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蓄積하고 있는 것이다. 根本的으로 교역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서비스가 商品과 다를 理由는 없으며 특히,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商業서비스는 中間재로서 重要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交易
으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聯關效果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現在 UR協商에서는 國際去來가 重要視되고 있는 多様な 서비스를 대
상으로 交易의 확대와 자유화를 圖謀하기 위하여 많은 國家들이 參加한
가운데 활발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다. 本 研究는 이중에서 建設 및 엔지
니어링 서비스의 交易확대 및 자유화와 關聯하여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에 관하여 檢討하고 있다.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構造的 特徵, 國際
化的 重要性 및 期待效果, 國際化的 推進課題 특히, 國內規制 및 制度的
改善을 中心으로 分析하고 있다.

本 研究가 政策當局, 企業, 研究機關, 學界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여
러분들에게 좋은 資料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國際化에 대한 認識을 높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本 研究는 本 研究院의 張義泰 招請研究委員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本 研究院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論評 및 助言이 큰
도움이 되었다. 打字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韓晶惠 嬢에게 감사한다. 끝
으로 本 研究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の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0 年 10 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金 迪 教

目 次

序 言

I. 序 論	11
II. 서비스交易의 特性 및 建設서비스交易	17
1. 서비스交易의 特性	17
2. 서비스交易의 擴大 推移	20
3. 建設서비스交易 動向	24
(1) 海外建設市場의 構造變化	24
(2) 韓國의 海外建設現況	27
III. 韓國建設産業의 構造的 特性	31
1. 建設業의 範圍 및 特性	31
(1) 建設業의 範圍	31
(2) 建設業의 特性	31
2. 韓國建設業의 成長背景	33
3. 韓國建設業의 需要供給構造	37
(1) 建設需要의 高級化 및 多樣化	37
(2) 國內建設供給	42
(3) 엔지니어링 서비스供給	48

4. 韓國建設産業의 産業聯關關係	51
(1) 産出構造 및 前方聯關效果	52
(2) 投入構造 및 後方聯關效果	54
IV. 韓國建設産業에 대한 規制制度 및 政策	57
1. 建設에 대한 規制	58
(1) 國內建設	58
가. 免許制度	58
나. 都給限度制度	63
A. 都給限度制度	63
B. 都給下限額制度	65
C. 地域制限制度	66
다. 入札方式	67
(2) 海外建設	71
가. 建設産業에 대한 支援制度	71
나. 海外建設 免許制度	72
2. 엔지니어링産業의 育成政策	73
(1) 主契約者 制度	74
(2) 外國用役發注承認制度	75
3. 技術資格制度	75
V. 韓國建設市場 開放의 期待效果	77
1. 使用者 利益	80
2. 海外市場 進出擴大	86
3. 品質向上과 後方聯關效果	87
4. 要 約	88

VI. 韓國建設產業의 國際化 推進課題.....	91
1. 國內建設市場의 開放	92
2. 建設產業 聯關規制의 改善	94
3. 海外建設市場 進出促進	97
4. 產業構造 調整方案	99
VII. 結 論	101

表 目 次

II-1	1987-1988 世界交易 規模	21
II-2	國內總生產中 서비스産業 比重 推移	21
II-3	1970-1987 期間中 全世界 商品 및 서비스輸出 推移	22
II-4	世界 建設投資額 및 250大 建設企業의 受注額 推移	25
II-5	地域別 海外發注 推移	27
II-6	主要國의 建設輸出	28
II-7	工種別 海外建設 受注實績 推移	30
III-1	國內總生產 및 雇傭에서 建設業의 比重	34
III-2	海外建設受注額 推移	36
III-3	民間 建築許可 面積과 施工額 推移	38
III-4	建設部門의 輸入中間財, 事業서비스 및 輸入事業서비스比率 推移	39
III-5	建設工事 業種別 施工額 推移	40
III-6	建設工事 發注機關別 契約實績 推移	41
III-7	從業員 規模別 事業體數	46
III-8	從業員 規模別 工事額	47
III-9	技術用役 登錄業體 推移	49
III-10	技術用役 受注實績 推移	50
III-11	固定資本形成의 資本財 形態別 構成推移	52

Ⅲ-12	產業別 中間需要率 推移	53
Ⅲ-13	1987年度 產業別 感應度 係數	54
Ⅲ-14	產業別 中間投入率 推移	54
Ⅲ-15	1987年度 產業別 影響力係數	55
Ⅲ-16	產業別 雇傭誘發係數	56
Ⅳ-1	一般 及 特殊建設業免許 推移	60
Ⅳ-2	1989年度 土木, 建築工事業 都給限度額 規模別 分布現況	64
Ⅳ-3	1990年度 建設工事 都給下限額	66
Ⅳ-4	1987年度 公共 建設工事의 地域別 契約實績	67
Ⅳ-5	國內 發注機關別 契約方式	68
Ⅳ-6	契約方法別 工事規模別 分布	69
Ⅳ-7	海外建設 免許業體數 推移	72
V-1	總固定資本形成中 建設投資의 比重	82
V-2	國內總生產中 固定資本消耗의 比重	83
V-3	總固定資本形成 增加率 及 耐用年數 變動과 建設物 固定 資本消耗 變動	84

圖 目 次

Ⅲ-1 競爭 및 獨占下에서 品質改善의 選擇	45
-------------------------------	----

I. 序 論

1986년 Uruguay에서 出帆하여 今年末 妥結을 目標로 현재 급속하게 進行되고 있는 GATT의 多者間 貿易協商인 Uruguay Round (UR)는 과거 협상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相異하다. 무엇보다도 UR협상은 過去 協商에 비해서 다양한 議題를 協商 對象으로 하고 있다.¹⁾ 새로운 議題中에서 서비스의 國際去來를 확대하고 自由化하며 서비스交易에 대한 規範을 制定하는 문제는 많은 국가들의 관심과 노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生産 및 消費에서 서비스와 財貨의 聯關關係가 深化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重要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대한 需要는 消費패턴의 高級化 多樣化에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生産의 專門化 分業化를 反映하여 生産활동에 투입되는 中間財로서 역할을 하는 소위말하는 商業서비스 (business servic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生産 및 消費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의 重要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서비스의 國際去來도 크게 增加하고 있는 趨勢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交易에는 많은 障礙要因이 存在하고 있다. 서비스는 商品과는 달리 無形이며 貯藏이 不可能하므로 서비스교역을 위하여는 기술, 자본, 人力과 같은 生産要素 뿐만 아니라 生産의 主體가 되는 서비스공급자의 國家間 移動이 필요한데 이에 많은 制約이 따르고 있다.²⁾ 또한 서비스의 경우에

- 1) 과거 7차에 걸친 GATT 협상에서 主 議題는 關稅引下 문제이었으며 제7차 Tokyo Round(1973-1979)에서는 非關稅장벽의 제거가 논의되었다. 금번 UR協商에서는 그동안 GATT 협상의 對象으로 부터 제외되어 왔던 開發途上國들의 관심분야인 농산물과 섬유문제가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UR협상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이들의 적극적 參與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새로운 의제(new issues)로서 서비스,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그리고 무역관련 투자조치가 중요한 협상의제로서 擡頭되고 있으며 先進國들은 이분야에 대한 협상에 역점을 두고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2) 서비스공급자의 國家間 移動은 外國人投資法, 人力의 국가간 이동은 移民법 등에 의해서 制限을 받고 있다.

는 使用者 保護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다양한 規制들이 부과되며 이 規制들은 國家마다 相異하기 때문에 交易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요소 및 서비스공급자의 국가간 이동 그리고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各國의 상이한 규제들을 緩和하고 調和하기 위한 多者間 規則의 制定은 서비스 交易의 促進 및 自由化를 위하여 緊要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交易에 대한 多者間規範에 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意見은 크게 對立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外國企業들의 設立權을 인정해주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시장 進入障壁을 제거하는 것이 서비스交易 확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開途國들은 設立權은 自國의 開發目標에 따라서 裁量의으로 行使될 수 있는 主權事項이라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開途國들은 서비스공급이 일반적으로 자본, 기술, 또는 知識集約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 比較優位가 있으나 개도국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幼稚產業으로서 保護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들은 경제발전 단계 및 국가정책 목표에 대한 고려, 유치산업 보호 등을 理由로 서비스交易의 급속한 自由化를 반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優待條項 또는 例外措置의 認定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한 예외조치의 인정은 결국 상품交易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예외조치의 濫用을 招來하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交易의 실질적 自由화가 沮害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비스交易의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관해서도 선진국들은 자본,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요시하며 노동력이동에 대해서는 서비스공급에 필수적인 관리 및 기술인력 (key personnel)의 이동만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비숙련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이 UR 서비스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취하고 있는 立場에는 커다란 差異가 存在하고 있으며 이 差異를 좁히기 위하여 UR 서비스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基本目標은 서비스交易의 점진적 自由化 (progressive liberalization)가 되고 있는 것이다. UR 서비스협상이 서비스交易 확대 및 自由化를 이룩하는데 얼마나 實質的인 成果를 거두지는 不確實하지만 서비스交易에 대한 다자간규범을 確立하며 서비스交易를 확대하고 自由化하기 위한 國際的 努力은 持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왜냐하면 商品交易의 擴大 및 自由化가 많은 交易當事國들에게 利益을 제공

한 것처럼 서비스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통하여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교역 확대 및 자유화는 小規模 開放經濟 (a small open economy)의 構造的 特徵을 갖고 있는 韓國經濟에게 커다란 經濟的 利益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過去 交易의 利點을 活用함으로써 급속한 經濟成長과 發展을 이룩한 經驗을 蓄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역의 이점을 활용하는데 서비스가 상품과 다를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最終消費의 高級化 및 多樣化 趨勢, 技術革新, 생산의 분업화 등을 반영하여 中間財로서 서비스의 重要度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교역 확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R 서비스協商에서 韓國은 對內外的으로 相反되는 壓力에 直面하고 있다. 對外的으로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들은 그들의 큰 관심분야가 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에 한국이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서비스 規範 制定 및 서비스교역 자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³⁾ 다른 한편, 對內的으로는 서비스産業에 종사하고 있는 國內企業들의 保護主義 壓力이 漸增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대부분은 아직 技術, 資金力 등이 부족하고 國際競爭力이 脆弱하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들과 自由競爭하기 어려운 狀態이며 따라서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기업의 大量 倒産과 失業의 發生을 憂慮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法規 및 規制들이 지나치게 複雜多岐하여 서비스산업 발전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 提高에 隘路가 되고 있으나 關係 利益集團 및 既得權者들의 저항 및 압력으로 인하여 制度改善 및 整備가 容易하지 못한 實情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韓國은 어떻게 對應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국내기업 및 이익집단들의 단기적 이익 및 정치적 압력도 輕視되기 어려운 문제이겠으나 이보다 根本的으로 考慮해야 될 問題는 長期的 觀點에서 서

3) 특히, 한국의 가장 重要한 교역상대국인 美國의 壓力은 加重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美國과의 雙務협상에 따라서 보험, 영화, 광고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미국은 계속하여 한국에 대해서 金融, 情報通信 등 주요 서비스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일방적 要求 및 美 通常法 301條에 의거한 보복위협은 한국으로 하여금 多者間協商에 積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實質的인 壓力으로 作用하고 있다.

비스교역 확대 및 자유화가 한국경제의 持續的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큰 利益이 될 것이냐 이다. 즉, 이익집단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의 追求라는 觀點에서 서비스교역 확대 및 자유화가 韓國 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에 대한 客觀的인 分析이 要求되고 있다.

특히, 금융, 정보, 통신, 교통, 전문서비스 등 생산 및 企業活動에 긴요한 서비스 需要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良質의 서비스를 圓滑하게 供給하는 문제는 聯關產業의 發展 및 競爭力 決定에 중요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으나 國內業界는 幼稚產業保護 論理에 따라 國內 서비스市場 開放에 대해서 反對하고 있다. 그러면 국내시장 보호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提高시키고 그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効果적인 方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經驗에 비추어 볼 때 국내시장 보호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술습득, 기술개발을 促進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국내시장에 安住하려는 性向을 助長시키고 따라서 政策意圖와는 反對되는 結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국내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위험부담이 높은 海外進出보다는 국내시장 確保에 注力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韓國經濟의 成長과 發展의 原動力은 海外 新市場을 開拓하고 新製品을 開發하는 進取的인 企業家 精神이며 선진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을 圖謀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國內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効果적인 方案으로서는 消極的인 국내시장 보호보다는 先進國 企業의 國內市場 蠶食이라는 위험부담이 따르나 積極的인 國際化의 推進이 時急한 것이다.⁴⁾

本 研究의 目的은 UR 서비스協商에서 論議되고 있는 서비스 分野中에서 建設 및 建設엔지니어링 서비스에 關해서 살펴보고 同 서비스의 交易 擴大 및 自由化와 關聯하여 韓國 建設產業의 國際化 戰略을 檢討하는 것이다. 建設산업은 餘他 서비스산업과 相異한 特性을 갖고 있으며 建設서

4)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出產하기 위하여는 技術, 知識, know-how 등 人的資本要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는 將來에 韓國이 比較優位를 갖을 수 있는 有望한 分野라고 볼 수 있다.

비스의 國際去來는 建設裝備, 資材, 人力 등 많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移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交易擴大에 障礙要素가 相對的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建設業은 1970년대 중반이후 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中東建設市場에 進出하여 놀라운 成果를 거두었으며 飛躍的인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와같은 中東進출의 經驗을 考慮할 때 建設分野는 다른 서비스분야에 비해서 韓國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다고 認識되고 있으며 建設교역의 확대 및 自由화를 위하여 한국의 積極的 役割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最近 國內建設業界는 해외진출을 기피하고 相對的으로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국내시장의 確保에 注力하며 技術開發 및 國際競爭力 提高 努力에 소홀히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建設需要의 高級化 多樣化 趨勢 그리고 민간 및 公共部門의 고정자본형성에서 建設이 차지하는 큰 比重을 고려할 때 積極的인 國際化의 推進을 통하여 국내 建設업계의 體質改善을 이루고 供給되는 建設物의 品質向上 및 技術提高는 시급한 課題가 되고 있다.

本 研究에서 檢討하고자 하는 內容을 要約해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특성 및 장애요인 그리고 建設서비스 교역의 動向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우선, 建設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한국건설업의 성장배경과 수요 공급구조의 특징, 특히 建設수요 패턴의 變化 및 국내공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建設산업과 여타산업의 연관관계를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한국건설산업 관련법규 또는 규제들을 制度改善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다. 제 5장에서는 제 3장과 제 4장에서 분석된 것을 기초로 하여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했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서 分析한다. 제 6장은 建設교역 확대 및 한국건설산업에 대한 分析을 토대로 國際化의 推進을 위한 정책건의 사항을 識別하고 이를 檢討한다. 제 7장은 結論이다.



II. 서비스交易의 特性 및 建設서비스 交易

UR 서비스協商은 서비스交易에 대한 多者間原則 및 規則을 定立하기 위한 一般協定の 制定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個別 서비스分野의 特性을 反映하기 위하여 分野別 註釋書의 作成도 推進하고 있다. 建設/엔지니어링은 金融, 通信, 交通, 專門職서비스, 勞動力移動의 5個 分野와 함께 분야별 주석서가 필요한 對象分野로 選定되어 있다. 本章에서는 우선, 商品交易과 相異한 서비스交易의 特性을 검토하고 서비스交易의 障礙要因을 살펴본다. 둘째, 서비스交易의 擴大趨勢 및 建設서비스교역의 動向을 살펴보고 韓國의 建設서비스교역의 現狀 및 展望을 검토한다.

1. 서비스 交易의 特性

서비스는 商品과 相異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國際去來, 즉 서비스交易은 商品交易과는 다른 特性을 갖고 있다. 서비스는 무엇이며 財貨와 어떻게 다른지를 區別하는 서비스의 定義에 관해서는 經濟學者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見解는 없으나 Hill은 서비스의 特性으로서 서비스는 상품과는 달리 貯藏이 不可能하며 따라서 供給과 使用이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 Bhagwati는 서비스去來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가 近距離에 있어야만 되는 경우와 近거리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로 區分하고 있다.²⁾ 中東에서 建設工事を 수행하기 위하여는 建設서비스공급자, 예컨대 韓國建設業體가 中東에 進出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情報, 金融, 保險과 같은 서비스들은 通信技術의 發展으로 인하여 서비스공급자의 駐在 없이도 遠隔地에 있는 使用者에게 서비스를

1) Hill, T.P.,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o. 4, 1977.

2) Bhagwati, Jagdish N., "Trade in Services and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September 1987.

공급할 수 있다.³⁾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자체에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품과 달리 無形이고 공급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공급되는 서비스의 質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品質의 不確實性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들이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食品, 藥品에 대한 규제, 工產品에 대한 KS (Korean Standard) 標準制度 등은 製品 自體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며 반면에 醫療서비스, 建設서비스에 대해서는 醫師免許, 建設免許와 같이 免許制度를 통하여 서비스供給者에 대해서 規制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는 商品과 相異하기 때문에 서비스交易에는 상품교역과는 相異한 障礙要因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Hill이指摘한 바와 같이 서비스는 商品과는 달리 대부분 貯藏이 不可能하고 따라서 供給과 使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비스의 供給者와 使用者는 近距離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許容하는 設立權(right of establishment)의 認定은 외국인투자 自由化를 의미하며 이는 裁量的으로 行使되는 主權問題와 對立될 수 있으므로 外國 서비스공급자의 國內進入은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⁴⁾ 建設서비스를 外國에 提供하기 위하여서도 供給者인 建設業體가 그 나라에 進出하여야 하나 各國은 外國 建設업체의 國內進入에 대해서 制限하고 있으며 이것이 건설서비스

-
- 3) 그러나 서비스의 供給者와 使用者가 近距離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근거리로 있게 되면 서비스거래는 促進된다. 技術革新의 도움으로 遠隔地에 있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가 近距離에 있는 것이 보다 效率的이다. 예컨대, 金融機關이 遠距離에 있는 外國의 고객에게 金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에 支店을 설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現地 고객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4) 상품의 국가간 移動은 대부분의 경우에 關稅 또는 數量制限같은 소위말하는 國境措置(border measures)에 의해서 制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各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協商은 주로 關稅引下, 數量制限의 撤廢와 같은 국경조치의 완화 또는 철폐에 관한 것이다. 이와반면에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품과 달리 無形(invisible) 이기 때문에 국경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交易에 커다란 制約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서비스 產出에 투입되는 資本, 技術, 勞動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許容하는 것이 緊要하다.⁵⁾ 그러나 生産要素의 國家間 移動은 많은 制約을 받고 있다. 특히, 勞動力 移動에 대해서 先進國들은 엄격하게 制限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制限은 建設서비스중에서 人力의 投入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施工分野에서 國際去來를 크게 制約하고 있다.⁶⁾

셋째, 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해서 各國은 多様な 規制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外國에 供給하기 위하여는 그 나라에서 要求하고 있는 規制를 充足하여야 하며 이것이 서비스 交易에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情報 通信技術의 革新으로 서비스의 遠距離 國家間供給이 可能해도 서비스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규제들은 일반적으로 國家間에 調和(harmonization)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相異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國際去來는 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建築設計圖面은 國家間에 容易하게 移動될 수 있으나 이 서비스를 提供하는 建築士에 대한 資格에 대하여 國家마다 相異한 規制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비스交易에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서비스交易의 障礙要因은 商品交易에 부과되는 關稅, 쿼타와 같은 國境措置와는 性格이 다르며 그 除去 또는 緩和가 容易하지 않다.

5) 서비스교역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은 상품교역의 경우보다 작을 것이다. 왜냐하면 商品交易은 기술,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商品內에 體化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國家間 移動을 對替하는 效果를 갖게되는 반면에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국가간 이동하는 생산요소는 서비스공급에 필요한 총 생산요소중 일부가 될 것이며 나머지 생산요소는 現地에서 調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은행이 국내진출하여 금융서비스를 提供하는 경우에 核心 管理人力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은 국내에서 雇傭하게 될 것이며 海外建設의 경우에도 人力 및 建設資材의 상당부분은 現地에서 調達할 것이다. 이처럼 서비스교역에 수반하는 생산요소의 이동은 상품교역으로 인한 생산요소 이동효과보다 작으나 서비스교역은 생산요소가 국가간에 直接 이동하므로 생산요소가 體化된 상품교역보다 단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마찰과 갈등이 增大될 수 있다.

6) 1970년대 중반이후 中東의 建設붐은 勞動力移動이 許容되었기 때문에 可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R 서비스協商에서는 서비스 供給者 및 生産要素의 國家間 移動에 대한 制限을 緩和 또는 除去하고 서비스 供給者에 부과되는 국가간 相異한 規制들에 대하여 多者間 規範을 확립함으로써 서비스교역 확대 및 자유화를 圖謀하고 있다. 韓國 建設産業도 國際化를 積極的으로 추진하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교역을 擴大하기 위하여는 외국건설업체에 대한 국내시장 진입 허용, 人力을 비롯한 기술, 자본의 좀 더 자유로운 移動 허용, 국내제도 및 규제의 완화 및 외국제도와와의 調和 등 많은 문제들에 當面하게 될 것이다.

2. 서비스交易의 擴大 推移

서비스交易을 制約하는 여러가지 障礙要因에도 불구하고 최근 國際交易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現象은 서비스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GATT의 推計에 따르면 1988년도 全世界 商品交易額은 2조 8,800억달러 그리고 서비스交易 규모는 6,000억달러에 達하였으며 서비스교역은 전체교역의 1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實際 서비스交易額은 6,000억달러를 훨씬 上廻할 것이라고 GATT 報告書는 指摘하고 있다. 서비스교역 統計는 여러가지 要因에 의해서 過小集計되는 偏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⁷⁾

서비스교역이 增加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첫째, 各國의 經濟發展에 따라서 서비스부문이 擴大되는, 소위 말하는 經濟의 서비스화가 進展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2) 은 1975-1988 기간중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서독 4개국의 국내 총 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比重의 推移를 보여주고 있는데 經濟發展에 수반하여 서비스산업이 擴大되어온 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經濟의 서비스화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에 대한 需要增加에 基因하고 있다. 最終財로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要因은 財貨 또는 餘他 서비스를 產

7) 商品은 有形이므로 稅關의 通關節次에 의해서 交易規模가 비교적 正確하게 推定될 수 있지만 서비스는 無形이기 때문에 國家間 去來가 觀察될 수 없으며 漏落되기 容易하다.

<表 II-1>

1987-1989 世界交易 規模

(단위: 10억달러, %)

	金 額			年 增 加 率		
	1987	1988	1989	1987	1988	1989
상 품	2,525	2,880	3,090	17	14	7.5
서 비 스	530	600	n.a.	21.5	13	n.a.

주 : n.a. = not available

자료 : Press Release, GATT, 1990. 3. 14.

出하는데 投入되는 중간재의 役割을 하는, 소위말하는 商業서비스 (business service)에 대한 需要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消費의 고급화 다양화 그리고 生産의 專門化 및 迂回生産의 深化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國際間 相互依存關係의 深化는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 생산구조에 있어서 迂廻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산의 汎世界化 (globalization)가 촉진되고 있으며 최근 國際分業構造는 商品生産에 있어서 部品 및 中間재를 비롯하여 일부 生産工程이 국제적으로 분업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生産 및 消費에 있어서 서비스와 財貨의 聯關係가 深化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교역을 증가시키는 誘引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中間재 성격의 서비스는 대부분을 企業內部로 부터 供給받았으나 수요의 고급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表 II-2>

國內總生産中 서비스産業 比重 推移

(단위: %)

	韓 國	美 國	英 國	日 本	西 獨
1975	41.0	63.8	53.8	55.8	49.9
1980	44.1	64.6	51.1	57.8	51.4
1985	45.4	67.6	53.6	59.5	54.6
1988	45.7	68.8	57.3	60.2	n.a.

주 : 1988년도 통계의 경우 미국, 영국은 1986년 數値이며 일본은 1987년 數値임.

자료 : 우리경제의 서비스화 現況,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4.

위한 제품품질의 개선 또는 생산원가의 節減 등을 위하여 生産 및 企業活動에 필요한 서비스를 外部 專門企業으로 부터 공급받는 傾向이 높아지고 있다.

세째, 기술, 자본, 인력과 같은 생산요소의 國家間 移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서비스의 國際去來가 늘어나고 있다. 特히, 情報 通信 技術의 발전 및 혁신의 결과로 과거에는 불가능하였던 서비스의 遠距離 供給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서비스교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네째, 金融, 情報, 專門서비스 등 財貨 또는 餘他서비스의 產出에 投入되는 商業서비스 (business service)의 國際去來가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國際去來가 活潑하게 이루어져 온 서비스分野는 해운, 항공 등 승객 및 화물 운송서비스와 관광 여행서비스이였으나 最近에는 상업서비스의 교역이 急增하고 있으며 서비스교역 패턴은 變化하고 있다. <표 II-3> 은 1970-1987 기간중 서비스 分野別 輸出比重的 變動을 보여주고 있다. 同期間中 서비스교역은 상품교역과 거의 같은 速度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1980-1987 기간중 서비스교역의 年平均 增加率은 5%로서 상품교역 증가율 2.5%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種類別로 볼 때 1980-1987 기간중 운송서비스교역의 年平均 증가율은 2%에

<表 II-3> 1970-1987 기간중 全世界 商品 및 서비스수출 推移

(단위 : %)

	세계 총 수출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		년평균 증가율		
	1970	1987	1970-79	1980-87	1970-87
商 品	80.5	81	20.5	2.5	13
서 비 스	19.5	19	19	5	13
운 송	7.5	6	18	2	11.5
여 行	5.5	6	18	6.5	13
기타 개인서비스	6	7.5	20.5	6.5	14.5

주 : 本 統計數値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교역기준의 통계와 差異가 존재하며 특히 서비스교역 통계는 過小推計되었음.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1988-89, Volume I, GATT.

不過한데 비해서 여행서비스와 기타 개인서비스교역은 6.5%의 급속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타 개인서비스중에서도 金融, 通信, 專門서비스 등의 國際交易이 가장 급속한 伸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의 產出에는 技術, 知識, know-how와같은 人的資本의 投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다. GATT 報告書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서비스 수출 所得中 95% 以上이 라이선스, franchising, 商標, 기술 및 기타 無形의 知的財産으로 부터 발생하며 반면에 개도국들은 서비스수출 소득의 20% 以上을 노동력을 제공한 代價로 획득하고 있다.⁸⁾ GATT 推計에 의하면 1987년도 선진국들의 기타 개인서비스수출액 및 수입액은 各各 1,424억달러, 1,192억달러를 기록한데 비해서 개도국들의 기타 개인서비스수출액 및 수입액은 各各 227억달러, 257억달러에 不過하다.

서비스의 國際去來가 擴大되는 趨勢下에서 韓國의 서비스交易도 增加하여 왔다. GATT의 國際貿易 年次報告書의 발표에 따르면 1987년도 한국의 서비스수출은 80억달러로서 世界 15위, 수입은 50억달러로서 世界 19위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교역에서 30억달러의 赤字를 示顯하였다. <표 II-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서비스산업의 比重은 美國, 日本등과 같은 선진국들 보다는 낮은 水準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韓國의 서비스산업은 量的成長에도 불구하고 質的으로는 構造的 脆弱性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 韓國銀行에서 발표한 論文에 따르면 國內서비스산업은 財貨生產活動과 聯關하여 발전하기 보다는 所得水準 向上에 의한 소비증가에 依存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就業構造面에서도 기업수요에 의존하는 전문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減少하고 最終需要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⁹⁾ 경제발전과 소비패턴의 고급화 다양화에 따라서 生産 및 消費活動에서 서비스의 重要도가 커지고 있으나 금융, 정보, 통신, 전문서비스 등 중간재 役割을 하는 國內 商業서비스産業의 발전은 低調하며 반면에 最終消費 目的의 서비스산업은 지나치게 肥大해지고 있다.

8) GATT International Trade 1988-89, Volume I, GATT.

9) 하대근, 오동철, "우리經濟의 서비스化 現況",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 4

이는 商業서비스에 대한 國內需要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產出하기 위하여 必要的 技術, 管理能力, know-how, 高級人力 등의 不足으로 인하여 國內供給이 圓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⁰⁾

3. 建設서비스 交易 動向

(1) 海外 建設市場의 構造 變化

서비스交易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생산 및 기업활동에 投入되는 中間재 役割을 하는 商業서비스의 交易은 빠르게 擴大되고 있다. 한편, 建設서비스 交易은 1980년대 中東 建設景氣의 衰退와 함께 沈滯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서비스중에서 施工部門은 많은 裝備, 資材, 人力 등 生産要素의 國家間 移動이 필요하기 때문에 交易擴大에 制約이 크다. 반면에 設計, 監理와 같은 建設엔지니어링 部門은 技術, know-how에 의해서 提供되기 때문에 國際去來가 施工部門보다 相對적으로 容易하다고 할 수 있다.

UN이 發表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 전체의 建設投資規模는 1988년도에 2조 2,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78년도 1조 2,482억 달러에 비해서 81% 증가한 것이다.¹¹⁾ <표 II-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78-88 기간중 建設투자의 推移를 보면 1981년 이후 1985년까지는 世界的 景氣沈滯로 인하여 建設投資도 減少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世界經濟의 回復을 反映하여 建設投資는 빠르게 增大하고 있다. 地域別로는 日本과 西유럽의 伸張勢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 전체의 建設투자에서 日本과 西유럽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8년도의 15.8%와 25.2%에서 各各 22.5%와 25.9%로 上昇하였으며 北美과 아시아地域의 比重은 各各 23%와 7%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반면에 東歐와 開途國의 比重은 1978년도의 16.2%와 20%에서 各各 12.7%와 15.9%로 減少하였다.¹²⁾

10) 반면에 leisure, 享樂産業 등 最終消費 목적의 서비스는 勞動集約的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급속하게 成長하고 있다.

11) 131開國 基準이며 UN의 Construction Statistics Yearbook에서 발표한 統計이다.

12) 해외건설의 증기 전망과 발전전략, 해외건설협회, 1989. 10.

건설투자 규모에 비해서 건설서비스의 國際去來는 餘他 서비스보다 相對적으로 작다. 왜냐하면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건설서비스중에서 比重이 큰 施工分野는 많은 裝備, 資材, 人力의 移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國際去來가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世界 全體의 建設交易規模에 대한 統計는 없으나 Engineering News Record가 발표하는 世界 250大 建設業體의 受注額은 세계전체 建設投資額의 13-15% 水準으로 비교적 安定되어 있으므로 이를 利用하여 世界建設發注의 變化 推移를 推定할 수 있다. <표 II-4>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50大 建設業體의 總受

<表 II-4> 世界 建設投資額 및 250大 建設企業의 受注額 推移

(단위 : 억달러, %)

	世界 建設投資額(A) ¹⁾	250大 企業의 總受注額(B)	250大 企業의 海外受注額(C)	B/A	C/A	250大 企業의 海外受注比重 ⁴⁾
1978	12,482	1,043 ²⁾	499	8.4	4.1	47.8
1979	14,152	1,306 ²⁾	666	9.2	4.8	48.5
1980	15,652	2,180	1,083	13.9	6.9	49.0
1981	15,562	2,499	1,346	16.1	8.7	51.1
1982	14,661	2,175	1,231	14.8	8.4	55.2
1983	14,617	2,042	936	14.0	6.4	44.3
1984	14,776	1,914	805	13.0	5.5	41.2
1985	15,008	2,095	816	14.0	5.4	37.9
1986	17,738 ³⁾	2,311	739	13.0	4.2	31.6
1987	20,419 ³⁾	2,878	740	14.1	3.6	25.3
1988	22,605 ³⁾	3,475	941	15.4	4.2	26.7

- 주 : 1) 세계 131個國의 建設투자액 합계임.
 2) 200大 企業 기준임.
 3) 推定值임.
 4) 해외수주비중이 밝혀지지 않은 업체는 제외하였음.
- 자료 : Construction Statistics Yearbook, UN, 各 年度.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UN, 各 年度.
 Engineering News Record, McGraw-Hill, Inc., 各 號.
 各國別 建設투자 수요 예측모형, 해외건설경제 연구소

注額은 1982-84 기간중에는 감소하였으나 1985년부터 回復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빠르게 增加하고 있다. 그러나 총수주액중에서 海外受注額은 1981년 이후 激減하였으며 最近에 多少 回復되고 있는 趨勢이다. 이에 따라서 250大 建設業體의 海外수주 比重은 1981-82 기간중에는 50%를 上廻하였으나 이후에 繼續 下落하여 1987년에는 25% 水準에 그치고 있다. 이는 海外건설 與件이 惡化되고 海外건설업체간의 競爭이 激化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50大 建設業體에 대한 海外發注額의 趨勢를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東地域의 海外건설 발주액은 1982년도 512억 달러에서 1987년도에는 1/4 水準인 134억 달러로 激減하였는데 이는 主로 石油價格 下落으로 인한 中東 產油國들의 財政壓迫에 緣由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아프리카, 中南美地域 개도국들의 海外건설 발주액이 감소한 것은 自國 建設업체의 供給比重을 높히려는 政策에 基因하고 있다.¹³⁾ 셋째, 北美.유럽地域의 海外발주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先進國 景氣의 回復과 함께 中東 및 개도국 建設시장의 발주가 減少함에 따라서 250大 建設업체들이 先進國 建設市場의 수주에 注力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海外 建設市場의 與件은 노동집약적 單純施工에 比較優位를 누리왔던 韓國과 같은 國家들에게 不利하게 變化하고 있다. 첫째, 東南亞 및 中東 國家들은 外國 建設업체의 單純工事 參與를 제한하며 現地業體와의 合作을 義務化하는 등 규제조치를 통하여 自國化 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동남아 및 아프리카국가들은 投資財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施工者金融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한편, 建設서비스의 國際去來가 擴大될 수 있는 要因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시장규모가 대단히 큰 日本, 美國, EC 등 선진국 建設시장이 開放되면 서비스교역은 급속하게 增大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 석유가격이 上昇趨勢에 있으므로 中東건설시장의 호황의 到來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人力의 移動을 필요로 하는 單純施工보다는 타당성조사, 기획, 설계, 감리, 관리 등 기술집약적 建設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國際去來가 크게 擴大될 展望이다.

13) 海外建設의 중기전망과 발전전략, 海外건설협회, 1989. 10.

<表 II-5>

地域別 海外發注 推移

(단위: 억달러, %)

	中 東	아 시 아	유 럽	北 美	世界全體
1978	164 32.4	74 14.6	57 11.3	50 9.9	506 100.0
1979	218 32.4	98 14.6	76 11.3	66 9.8	672 100.0
1980	353 32.5	159 14.6	123 11.3	106 9.8	1,086 100.0
1981	482 35.8	222 16.5	101 7.5	113 8.4	1,346 100.0
1982	512 41.6	235 19.1	111 9.0	93 7.6	1,231 100.0
1983	330 35.3	154 16.5	95 10.1	80 8.5	936 100.0
1984	266 33.0	183 22.7	92 11.4	85 10.6	805 100.0
1985	216 26.5	178 21.8	100 12.3	102 12.5	816 100.0
1986	161 21.8	173 23.4	119 16.1	104 14.1	739 100.0
1987	134 18.1	155 21.0	172 23.3	115 15.6	739 100.0
1988	174 18.5	205 21.8	194 20.6	192 20.4	941 100.0

자료: (표 II-4) 와 同一함.

(2) 韓國의 海外建設 現況

韓國의 海外建設은 1970년대 중반이후 國際 石油價格의 急騰에 따라 好況을 누리게 된 中東建設市場에 성공적으로 進出하여 莫大한 外貨獲得, 고용증대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先進 建設技術의 습득과 經驗의 축적, 해외진출 人力的 養成 및 開發이라는 成果를 거두었다.¹⁴⁾ 中東建設市場의 好況을 契機로하여 建設業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韓國은 1981-1983 기간중에 美國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建設수출국으로 浮上하였다. Engineering News Record의 추계에 의하면 세계 250大 建設會社의 海外受注를 기준으로 할 때 1981년도 세계 建設수주규모는 약 1,299억달러이였으며 이를 國別로 보면 1位가 미국으로 수주액 441억달러로서 全體의

14) 한국 최초의 해외건설 工事は 1965년 現代建設이 受注한 태국의 道路工事 였다. 한국의 해외건설은 1960년대 중반 월남을 비롯하여 東南亞 地域에 進出하였으며 특히, 韓國軍의 越南戰 參戰으로 軍關聯 工事에서 特需를 누렸다.

33.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이 수주액 143억달러, 11%를 占하였다.¹⁵⁾ 해외수주의 擴大에 수반하여 많은 建設人力이 해외로 進出하였는데 해외건설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1-83 기간중에 해외진출 建設人力은 16-17만명에 이르렀다.

<表 II-6>

主要國의 建設輸出

(단위 : 10억달러, %)

	1981	1983	1986	1988
미 국	44.1 (33.9)	29.4 (31.4)	22.6 (30.6)	25.9 (27.5)
한 국	14.3 (11.0)	10.4 (11.1)	2.6 (3.5)	1.4 (1.6)
일 본	8.2 (6.2)	8.7 (9.3)	9.4 (12.7)	11.6 (12.3)
프 랑 스	12.5 (9.6)	10.0 (10.7)	7.1 (9.6)	11.1 (11.8)
독 일	10.0 (7.7)	5.4 (5.8)	5.5 (7.5)	8.1 (8.6)
이탈리아	8.2 (6.3)	7.2 (7.7)	7.4 (10.0)	13.3 (14.2)
영 국	7.9 (6.1)	6.4 (6.8)	7.0 (7.5)	9.4 (10.0)
기 타	24.7 (19.0)	16.1 (17.2)	12.3 (16.6)	8.5 (9.0)
합 계	129.9 (100.0)	93.6 (100.0)	73.9 (100.0)	94.1 (100.0)

자료 : Engineering News Record, McGraw-Hill Inc., 各號

그러나 한국의 해외건설수주는 石油價 안정과 중동建設景氣가 沈滯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減少하였다. 1981년 이후 해외건설수주는 계속 줄어들었으며 특히, 1983년부터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88년도 해외건설수주액은 16억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1981년도 수주액의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중동건설수주액은 12억 51백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1981년도 수주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Engineering News Record의 調査에 따르면 중동건설시장에서 한국의 占有率은 1985

15) 해외건설에 의한 外貨收入은 해외건설 수주액이 최고조에 達했던 1981년 및 1982년에 各各 19억달러, 23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년도 15.6%에서 1986년도 7.8%, 1988년도 5.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건설분야에서 수요가 급속히 減退하였으며 同時に 한국건설업체들은 기술집약적 건설분야 진출에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海外建設에 投入되는 人力의 數도 1982년도에 17만 1천명에 達하였으나 이후 繼續 減少하여 1989년도에는 1만 8천명에 그치고 있다.

最近에 海外建設은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다. 1989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24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前年度 對比 50%의 伸張을 하였다. 특히, 東南亞地域에 대한 해외건설수주는 1988년도 2억 4천만달러에서 1989년도에는 7억 6천 6백만달러로 3배이상 增加하였다. 1990년도에 들어와서 해외건설수주는 더욱 빠른 速度로 擴大되고 있다. 1990년도 1-8월 기간 중 해외건설수주액은 57억달러에 達하였으며 이는 前年度 수주액 24억달러의 2배 이상에 이르는 成果이다.¹⁶⁾

그러나 韓國 해외건설의 受注構造는 90% 이상을 中東 및 東南亞市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地域的 偏重이 問題로 되고 있다. 따라서 日本, 美國, EC 등 선진국 건설시장에 진출하여 市場多變化를 圖謀하는 것이 중요한 課題로 되고 있다. 특히, 日本의 건설시장은 內需擴大政策 및 公共部門의 投資 增大에 따라서 急成長하고 있다. 1989년도 일본의 건설투자 규모는 5,23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미국의 건설투자를 능가하였다. 또한 EC도 經濟統合에 따라서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潛在力이 큰 市場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韓國의 建設業體들이 先進國 市場進出을 하기는 容易하지 않을 展望이다. 韓國業體들은 建築·土木中心의 施工分野에서 많은 경험과 know-how를 蓄積하여 競爭力을 갖고 있으나 建設人力의 移動에 대한 制約으로 인하여 큰 成果를 얻기 어려우며 施工外 分野인 設計, 妥當性 調査, 監理 등 엔지니어링에서는 競爭力이 脆弱하기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진출을 기대할 수 없는 實情이다.

한국 해외건설의 工種別 受注實績을 보면 建築과 土木工事が 絶對的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7>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

16) 1990년도에 해외건설수주가 급증하게 된 것은 東亞建設이 리비아 大水路工事を 수주한데 기인하고 있다. 1990년도 受注分은 36억달러 이다.

및 토목공사는 全體의 80% 이상을 占하고 있다. 그러나 附加價值가 높고 高度의 技術을 必要로 하는 機械·電氣通信, 用役部門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건설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축 및 토목부문에서도 國內人件費의 급격한 上昇으로 인하여 中國, 아세안國家들, 터키 등과 같은 개도국들과의 競爭이 深化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국내건설업계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未洽한 實情이다.¹⁷⁾ 따라서 先進技術의 습득 및 技術開發은 競爭力을 提高하고 海外進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업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表 II-7>

工種別 海外建設 受注實績 推移

(단위: 백만달러, %)

	建 築	土 木	機 械	電氣通信	用 役	合 計
1982	6,238 46.6	4,876 36.4	1,677 12.5	580 4.3	12 0.2	13,883 100.0
1983	4,150 39.7	5,199 49.3	847 8.1	182 1.8	66 0.6	10,444 100.0
1984	3,671 56.4	1,235 19.0	1,395 21.4	184 2.9	17 0.3	6,502 100.0
1985	1,249 26.6	2,544 54.3	381 8.1	458 9.8	58 1.2	4,691 100.0
1986	1,172 52.3	849 37.9	183 8.2	26 1.2	8 0.4	2,239 100.0
1987	584 34.1	782 45.7	101 5.9	225 13.2	18 1.1	1,711 100.0
1988	632 39.5	748 46.7	106 6.6	101 6.3	14 0.9	1,602 100.0
1989	499 20.7	1,082 44.9	600 24.9	212 8.8	18 0.7	2,412 100.0

자료: 한국 해외건설의 최근 현황과 발전방향, 이덕준, 月刊 海外建設, 1990. 5

17) 一般 建設업체의 기술개발 투자는 賣出額 對比 0.1%에 지나지 않으며 日本의 0.47%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 지고 있다.

Ⅲ. 韓國建設產業의 構造的 特性

1. 建設業의 範圍 및 特性

(1) 建設業의 範圍

建設의 範圍은 좁은 의미의 建設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施工部門뿐만 아니라 基本 설계, 상세 설계 그리고 企劃, 타당성 조사 등의 建設관련 엔지니어링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解釋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建設엔지니어링 서비스는 建設物의 產出과정에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投入要素이며 建設수요의 고급화 다양화추세에 따라서 施工서비스보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重要性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둘째,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UR 서비스협상에서 선진국들의 관심분야이며 반면에 施工 서비스는 韓國과 같은 中進國 및 開途國의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施工과 엔지니어링 分野를 分離하여 論議하기 곤란하다. 셋째, 施工서비스는 建設장비, 人力 등 많은 生産要素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交易에 制約이 많은 반면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主로 技術, know-how 에 의해서 제공되므로 施工분야보다 國際去來가 상대적으로 容易하다.

(2) 建設業의 特性

建設業의 特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建設業은 先受注 後生産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建設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매우 多樣하므로 製造業과 같이 표준화된 제품을 사전에 大量生産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建設에 대한 수요는 變動이 심하다. 建設공사는 政府의 公公투자, 기업의 설비투자 또는 개인의 주택에 대한 투자 등으로 부터 派生되는데 일반적으로 民間투자수요는 長래에 대한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最終 소비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變動이 심하며 이로 인하여 公公자로서 建設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크다. 수요면에서 뿐만 아니라 公公면에서도 不確實한 要素가 많다. 일반적으로 建設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장기이고 主로 域外에서 公公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 계절변화 등 불확실

한 자연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면에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설업에서는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下都給制度가 발달하고 있다.¹⁾

세째, 建設物을 공급하는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建設物을 구매하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높다. 건설업자는 공사가격 및 建設物에 대한 공사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한 후에 건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事後에 建設物을 제공받게 되고 따라서 그 品質의 불확실성이 높다.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不實工事に 관련된 시비가 빈번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부실공사를 줄이고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자체에 대해서 보다는 주로 建設物을 供給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公的規制가 부과되고 있다.

네째, 건설업의 진입장벽 (barriers to entry)은 높지 않다. 건설서비스는 주로 전문기술, know-how 등 인적자본 (human capital)에 의해서 공급되는데 전문지식은 쉽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新規기업도 자금력을 이용하여 필요한 경영진 또는 기술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建設의 경우에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광고, 또는 進入 沮止價格 政策 등이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서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규모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다섯째, 社會間接資本形成을 위한 정부의 公共건설공사는 그 規模 및 建設수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가 독점력(monopsony power)을 행사하기 용이하며 공사가격의 결정방법, 공사계약의 세부사항, 공사대금의 지불방법 등에 관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여섯째, 해외건설공사는 국내공사보다 위험부담이 큰 반면에 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利點이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의 건설공사는 대규모이다. 그러나 대규모공사에 상응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들도 각국에 多數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공사수주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이와같이 공급자인 건설업자들 사이에 경쟁은 치열하고 반면에 수요자인 발주자들은 限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1) 大型建設業體의 경우에는 변동이 큰 建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業域에 진출하려는 성향이 크다.

去來에서 발주자가 상대적으로 有利한 위치에 있게 된다. 최근에 해외공사 발주자들은 공급자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비롯하여, bid bonds, performance and guarantee bonds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保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發注者의 獨寡占力이 強化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2. 韓國建設業의 成長 背景

韓國建設業은 高度경제성장에 수반하여 급속하게 成長하여왔다. 韓國經濟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推進을 통하여 놀라운 成長을 이룩하였다. 1966-1989 기간중 국민총생산은 1980년 不變價格을 기준으로 할 때 4조 3,785억원으로 부터 119조 5,348억원으로 27배 증가하였으며 年平均 15.5%의 成長率을 記錄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민간자본 蓄積은 短期間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高度경제성장에 크게 寄與하였다. 총 고정자본형성은 198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66년도 7,598억원에서 1989년도에는 39조 2,814억원으로 52배 擴大되었으며 年平均 增加率은 18.7%에 이르고 있다.

고정자본형성에서 建設은 대단히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道路, 港灣, 通信, 電氣 등 社會間接資本의 形成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民間資本形成에서 건설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住宅을 비롯하여 各種 사회 복지시설의 공급, 국토개발, 지역개발을 遂行하는데 건설의 役割은 대단히 중요하다. 건설업으로 부터 產出된 附加價値는 198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1966년도 1,438억원으로 부터 1989년도에는 9조 3,427억원으로 65배 늘어났으며 年平均 19.9%의 增加率을 示顯하였다.

이처럼 建設業은 다른 部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成長을 하였다. <표 III-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총 생산(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전반에 4-5% 수준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중동 건설시장 進出에 따라 7-8%로 크게 신장하였다. 1983년이후 中東建設景氣의 침체로 인하여 다소 침체하였으나 최근에 국내건설수요는 急增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과열이 우

려되고 있다. 1989년도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경상가격으로 13조 8,081억 원이며 국내 총 생산(GDP) 142조 2,668억원의 9.7%를 차지하였다. 雇傭面에서도 建設業의 比重은 크게 伸張되었다. 1966년도 總 就業者 8,423천 명중에서 건설업 고용자는 209천명으로서 2.5%를 차지하였으나 1989년도에 건설업고용자는 1,140천명으로 증가하여 총 취업자 17,515천명의 6.5%를 占하게 되었다.

<表 Ⅲ-1>

國內總生産 및 雇傭에서 建設業의 比重

(단위 : 10억원, 천명, %)

	GDP (A)	건설업 (B)	B/A	취업자 (C)	건설업(D)	D/C
1970	2,759.8	143.3	5.2	9,745	284	2.9
1971	3,409.7	156.9	4.6	10,066	348	3.5
1972	4,193.9	177.5	4.2	10,559	392	3.7
1973	5,396.8	238.7	4.4	11,139	371	3.3
1974	7,631.3	339.9	4.5	11,586	450	3.9
1975	10,223.9	484.9	4.7	11,830	511	4.3
1976	13,995.7	639.4	4.6	12,556	529	4.2
1977	17,985.2	1,009.4	5.6	12,929	625	4.8
1978	24,242.5	1,856.6	7.7	13,490	821	6.1
1979	31,224.1	2,666.0	8.5	13,664	836	6.1
1980	38,401.1	3,185.6	8.3	13,706	841	6.1
1981	47,482.0	3,437.4	7.2	14,048	875	6.2
1982	54,442.8	4,211.2	7.7	14,424	831	5.8
1983	63,832.8	5,171.2	8.1	14,515	816	5.6
1984	72,644.3	5,739.2	7.9	14,417	903	6.3
1985	80,846.9	6,250.8	7.7	14,935	908	6.1
1986	93,425.8	6,646.2	7.1	15,505	889	5.7
1987	108,428.3	8,069.2	7.4	16,354	920	5.6
1988	127,962.7	10,328.9	8.1	16,870	1,024	6.1
1989	142,266.8	13,808.1	9.7	17,515	1,140	6.5

주 : 경상가격임. 1989년은 잠정수치임.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9;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0 4.

한국건설업의 급속한 成長에 기여한 중요한 要因은 한국건설업체들이 중동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거두운 놀라운 成果이다. 1973년과 1979년에 發生한 세계 石油波動의 결과로 中東產油國들은 막대한 석유달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財源으로 많은 建設사업들이 추진되었다. 中東建設市場에 한국건설업체들은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한국의 해외 建設 수출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III-2>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70년 해외건설수주액은 48백만달러로서 전체수주액의 8%에 不過하였으나 1975년에는 8억 15백만달러, 전체수주의 44%로 急伸張하였다. 1975년 이후 중동건설수주액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1981년도 해외 建設 수주액은 136억 81백만달러를 記錄하였고 전체 建設수주의 70%를 占하였다. 이는 1981년도 상품수출액 212억 54백만달러의 64.4%에 達하고 있다.

한국건설업이 중동건설시장의 進出을 통하여 얻은 所得은 해외건설수주의 증대라는 量的 成果뿐만 아니라 施工經驗의 축적, 선진기술의 습득, 인력의 개발이라는 質的 成果에 있다. 한국건설업체들은 中東에서 建築·土木工事뿐만 아니라 플란트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는 經驗을 蓄積하였으며 이 공사들은 大部分 선진국의 기술로 설계된 공사이기 때문에 先進工法의 습득, 人力의 양성, 管理能力의 제고에 좋은 機會가 되었다.

<表 Ⅲ-2>

海外建設受注額 推移

(단위: 10억원, %)

	건설수주액 (A)	해외수주액 (B)	B/A
1970	188.0	15.2	8.1
1971	238.8	20.8	8.8
1972	231.2	33.2	14.4
1973	311.4	69.3	22.3
1974	525.7	126.1	24.0
1975	905.2	394.3	43.6
1976	1,946.8	1,208.3	62.1
1977	2,964.0	1,701.8	57.5
1978	6,261.6	3,942.1	63.0
1979	5,960.0	3,074.0	51.6
1980	8,423.1	5,450.3	64.7
1981	13,702.8	9,583.5	70.0
1982	15,194.2	10,021.5	66.0
1983	13,955.8	8,312.4	59.6
1984	11,680.7	5,380.0	46.1
1985	10,731.6	4,175.8	38.9
1986	9,460.4	1,928.7	20.3
1987	10,121.4	1,355.6	13.4
1988	11,010.9	1,089.2	9.9

주: 일반 및 특수건설액 수주액 추이임.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및 기타설비공사를 포함한 全建設業의 수주액자료는 없으나 <표 Ⅲ-2> 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건설부, 건설업 면허체제 개편자료, 1989. 11.

중동건설시장에 90% 이상을 依存하여온 한국의 해외건설수주는 중동의 건설경기가 沈滯되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81년 이후부터 해외건설수주는 줄어들기 始作하였으며 특히, 1983년부터는 急速하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1983년 이후 國內建設수주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 1,72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75년 5,109억원, 1980년 2조 9,728억원, 1985년 6조 5,55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에는 9조 9,217억원에 달하여 1970년 對比 57.4배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국내건설은 量的·質的으로 대단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1989년도 固定資本 投資中 建設部門은 餘他 部門보다 가장 빠른 신장세를 보여 前年對比 19.8%의 增加率를 기록하였으며 1990년에 들어와서는 더욱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1990년 상반기중 固定資本 投資中 建設部門의 增加率은 전년동기 對比 32.3%에 達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過熱이 우려되고 있다. 1989년도 국내건설시장 규모는 달러기준으로 223억달러 그리고 해외건설수주액은 24억 11백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국내건설의 比重이 약 90%, 해외건설은 나머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 韓國建設業의 需要 供給 構造

(1) 建設需要의 高級化 및 多樣化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初까지 한국건설업은 중동건설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해외건설수출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量的으로 급속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중동건설경기가 沈滯됨에 따라서 1983년 이후부터 해외수요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국내수요는 最近에 급신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需要面에서 해외건설수요의 비중이 감소하고 국내건설수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실시한 건설업통계조사에 따르면 1988년도 건설업의 총 수주액은 16조 6,929억원이며, 이중 국내수주액은 15조 4,303억원, 92.4% 그리고 해외수주액은 1조 2,626억원, 7.6% 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건설의 감소와 국내건설의 급신장 추세와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變化는 建設需要의 高級化 多樣化 현상이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건설수요가 質的으로 고급화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建築許可 面積當 施工額 規模가 物價上昇率보다 훨씬 급속하게 증가한 事實로 부터 類推할 수 있다. <표 III-3>

은 1978-88 기간중 民間 건축허가 면적 1m²당 시공액 推移를 보여주고 있다. 1m²당 시공액은 1978년도 7,066원에서 1988년도에는 50,302원으로 증가함으로써 年平均 21.7%의 增加率을 記錄하였는데 이는 同 기간중 都 賣物價 상승율 7.9%, 消費者物價 상승율 9.3%를 크게 上廻하는 것이다.

<表 Ⅲ-3>

民間 建築許可 面積과 施工額 推移

(단위: 千m², 백만원, 원)

	민간건축허가면적 (A)	시공액 (B)	B/A
1978	142,765	1,008,782	7,066
1979	120,970	1,398,704	11,562
1980	97,014	1,251,527	12,889
1981	68,865	1,472,004	21,375
1982	92,238	1,787,908	19,384
1983	115,817	2,226,817	19,227
1984	92,165	3,502,979	38,008
1985	85,380	4,051,733	47,455
1986	89,496	3,959,458	44,242
1987	103,796	4,631,303	44,619
1988	126,698	6,373,128	50,302

주: 시공액은 原都給工事 기준임.

자료: 한국통계연보, 경제기획원, 各 年度.

또한, 建設需要의 고급화 추세는 産業聯關 分析表에 나타나고 있는 建設 部門의 投入構造의 變化로 부터도 間接的으로 알 수 있다. <표 Ⅲ-4>는 1980-1987 기간중 建設部門의 총 투입중간재중에서 수입중간재의 비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반영하는 사업서비스의 비율 그리고 수입사업서비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Ⅲ-4> 建設部門의 輸入中間財, 事業서비스 및 輸入事業서비스 比率 推移

(단위: 백만원, %)

	1980	1985	1987
총산출액 (A)	7,492,407	15,462,488	18,306,319
중간투입액 (B)	4,424,487	9,294,428	11,017,635
B/A	59.1	60.1	60.2
수입중간투입액 (C)	284,703	490,016	787,150
C/B	6.4	5.3	7.1
사업서비스 (D)	123,872	816,531	1,155,585
D/B	2.8	8.8	10.5
수입 사업서비스 (E)	0	12	250,411
E/D	0	0	21.7

자료: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980. 1985;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12.

建設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입은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87년도에 투입중간재의 수입의존도는 7.1%로서 1985년 5.3% 및 1980년 6.4%보다 높은 수준이다. 1980년도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1985년 경우보다 높은 理由는 제 2차 石油波動에 수반하여 國際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라고 推測된다. 중간재수입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現象은 事業서비스의 투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활동에 투입되는 사업서비스는 建築設計, 測量, 各種 工學關聯서비스 그리고 建設業體의 重裝備 賃貸가 포함된다. 중간투입액중에서 사업서비스의 比重은 1980년도 2.8%에서 1987년도에는 10.5%로 크게 伸張하였다. 특히, 사업서비스의 수입의존은 1985년까지는 거의 全無하였으나 1987년도에는 사업서비스의 수입액은 2,504 억원을 記錄하였으며 사업서비스 투입액중 21.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업서비스의 투입이 증가하며 특히, 사업서비스의 해외의존도가 커지는 것은 建設物의 質的 高級化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

2) 建設需要의 고급화 추세는 통계자료가 示唆하는 것보다 더 급속하다고 推定된다. 왜냐하면 國內 建設공급이 수요를 圓滑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建設需要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와 함께 건설수요구조는 變化하고 있다. 첫째, 건설수요를 工種別로 區分할 때 土木工事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에 건축공사와 전문건설공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표 Ⅲ-5>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土木工事의 比重이 건축 및 전문직별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점차로 건축 및 전문직별공사의 重要性이 커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전문직별공사의 시공액 규모가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공사에서 건축공사와 기타 시설공사의 비중이 상승하고 건설수요가 고급화됨에 따라서 전문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表 Ⅲ-5> 建設工事 業種別 施工額 推移

(단위 : 10억원, %)

	총 시공액	건 축	토 목	전문직별
1969	186.7 (100.0)	70.1 (37.6)	100.0 (53.6)	16.5 (8.8)
1975	763.0 (100.0)	359.5 (47.1)	350.7 (46.0)	52.8 (6.9)
1980	8,010.0 (100.0)	4,360.7 (54.4)	2,964.9 (37.0)	683.9 (8.5)
1981	11,349.0 (100.0)	7,077.9 (62.4)	3,516.6 (31.0)	754.5 (6.6)
1982	14,208.5 (100.0)	8,588.4 (60.4)	4,699.1 (33.1)	920.9 (6.5)
1983	15,006.1 (100.0)	8,092.9 (53.9)	5,425.1 (36.2)	1,488.1 (9.9)
1984	16,201.9 (100.0)	9,527.5 (58.8)	4,661.1 (28.8)	2,013.2 (12.4)
1985	16,875.7 (100.0)	9,694.5 (57.4)	4,822.4 (28.6)	2,358.8 (14.0)
1986	15,298.8 (100.0)	7,140.7 (46.7)	4,699.8 (30.7)	3,449.4 (22.5)
1987	14,565.3 (100.0)	6,838.6 (47.0)	3,608.9 (24.8)	4,117.8 (28.3)
1988	16,533.5 (100.0)	7,961.6 (48.2)	3,031.9 (18.3)	5,539.9 (33.5)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 경제기획원, 各 年度

둘째, <표 Ⅲ-6>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건설수주를 발주 기관별로 구분할 때 과거에는 公共部門의 比重이 民間部門보다 컸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이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물론 公共部門에 속해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도 지하철, 고속전철, 공항 등 高度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公共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民間건설수요의 고급화 추세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많은 고층 건물들은 소위 말하는 intelligent building으로 設計되는 추세에 있다.

경제기획원이 發刊한 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도 국내 총수주액 15조 4,303억원 중 公共部門은 6조 947억원, 39.5%, 民間부분은 9조 2,166억원, 59.7%, 그리고 국내 외국기관은 1,190억원, 0.8%를 차지하고 있다. 건축공사, 전문건설공사, 그리고 기타설비공사의 민간부분 수주비중은 각각 75.7%, 61.9%, 91.9%로서 공공부분에 비해 크며 토목공사의 경우는 공공부분의 비중이 82.3%에 達하고 있다.³⁾

<表 Ⅲ-6> 建設工事 發注機關別 契約實績 推移

(단위 : 10억원, %)

	公 共		民 間		合 計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1976	510.9	69.2	227.7	30.8	738.6	100.0
1977	765.0	60.6	497.3	39.4	1,262.3	100.0
1978	1,038.9	44.8	1,280.6	55.2	2,319.5	100.0
1979	1,933.9	67.0	952.1	33.0	2,886.0	100.0
1980	1,717.9	57.8	1,254.9	42.2	2,972.8	100.0
1981	2,698.1	65.5	1,421.2	34.5	4,119.3	100.0
1982	3,032.2	58.6	2,140.6	41.4	5,172.8	100.0
1983	3,039.4	53.9	2,604.0	46.1	5,643.4	100.0
1984	3,538.1	56.2	2,762.6	43.8	6,300.7	100.0
1985	3,681.3	56.2	2,874.5	43.8	6,555.8	100.0
1986	3,769.2	50.1	3,762.5	49.9	7,531.7	100.0
1987	4,406.1	50.3	4,359.7	49.7	8,765.8	100.0
1988	4,027.8	40.5	5,911.9	59.5	9,939.7	100.0

자료 : 民間建設 白書, 대한건설협회, 1989.

3)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통계와 건설협회의 통계가 서로 相異한 것은 후자는 국내 全建設業體中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하여 민간자본의 蓄積이 필요불가결한 점을 고려할 때 建設需要의 量的 增加 및 質的 高급화 다양화 추세는 持續될 展望이다. 工場, 建物, 道路, 通信施設 등 多様な 建設物들은 財貨 및 서비스를 創出하고 消費하는 경제활동을 遂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生産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고속전철, 공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비롯하여 新都市建設, 低所得階層을 위한 주택건설, 사회복지시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와같은 公共的 성격의 건설수요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활수준의 향상에 수반하여 民間건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⁴⁾

특히 量的으로 증가하며 質的으로 고급화추세에 있는 國內建設需要의 산업연관 효과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설수요의 고급화는 건설물의 산출에 투입되는 人力을 비롯하여 건설자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수요를 고급화시킬 것이며 이와 같은 연관효과는 결국 人力개발, 기술개발, 그리고 공급의 고급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으로 고급화추세에 있는 국내건설수요를 어떻게 국내공급이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느냐는 한국건설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擡頭되고 있다.

(2) 國內建設 供給

國內建設需要는 量的으로 급속하게 增加하고 있으며 質的으로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같은 건설수요 패턴의 變化에 國內建設供給이 效率的으로 對應할 수 있겠는가. 現在 국내 건설업체는 국내건설시장을 開放하고 건설서비스 교역을 확대시키는 措置에 대해서 反對하는 입

4) 그러나 단기적으로 民間건설수요는 장기投資的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변동이 심하다. 왜냐하면 公共건설수요는 政府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安定化될 수 있지만 民間건설수요는 경제적 要因에 따라서 決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 국내건설수요가 단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과거에 비해서 해외건설수요의 比重이 크게 감소된 점을 고려할 때 국내건설 시장에서 수요의 급격한 감퇴로 인한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다변화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건설공급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건설수요를 원활하게 充足시키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使用者 損失은 고정자본형성에서 建設이 차지하는 比重을 고려할 때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고급화 다양화 되고 있는 국내수요를 確保 供給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을 선진국업체들의 競爭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내업체들의 기술습득 또는 기술개발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緊要하다는 소위 말하는 經驗을 통한 學習(learning-by-doing)의 論理를 提起하고 있으나 국내시장 構造에 경쟁제한적, 독과점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의 고급화에도 불구하고 공급측면에서 기술개발, 품질개선이 促進되기 어려운 實情이다.

물론, 供給側面에서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은 상당한 시간이 所要되기 때문에 국내건설공급은 건설수요 패턴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단기에 彈力的으로 對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⁵⁾ 그러나 건설수요의 고급화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공급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보다 根本的인 理由는 국내건설시장의 構造가 有效競爭을 촉진하기 보다는 獨寡占的 要素들이 많이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시장의 독과점 原因은 規模의 經濟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의 過多한 規制에 緣由하고 있다. 서비스의 경우에는 財貨와 달리 서비스의 使用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賦課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主로 進入障壁의 形態를 취하기 때문에 서비스시장 구조는 獨寡占化되는 傾向을 갖고 있다.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는 사용자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사용자보호라는 규제목적과 背馳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獨寡占供給者는 독과점이윤의 極大化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요패턴의 고급화에 迅速하게 대응해야 할 유인은 크지 않은 반면에 자유경쟁 상태에서 개별공급자는 수요변화를 주어진 與件으로 보고 競爭에서 淘汰되지 않기 위하여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對處하게 될 것이다. 자유경쟁에서 품질개선의 限界費用은 품질개선에 따르는 사용자의 限界利益 또는 限界效用과 一致하게 되나 독과점하에서 품질개선의 한계비용

5) 국내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 수록 수요증가는 相對的으로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품질저하를 招來하게 되며 使用者 損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은 獨寡占利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독과점 공급자의 限界收入과 일치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의 한계이익 또는 한계효용보다는 낮은 水準에서 決定되기 때문에 獨寡占下에서 品質改善의 정도는 競爭狀態에서 보다 작게 될 것이다.

<圖表 Ⅲ-1>에서 橫軸은 品質改善의 정도를 나타내며 右側으로 갈수록 品質 개선의 정도는 크다. 圖表의 縱軸은 品質의 單位當 價格 또는 生産費用을 나타낸다. MC는 品質 개선의 限界費用 曲線이며 品質 개선의 정도가 커질수록 한계비용은 遞增함을 나타내며, D는 品質 개선에 대한 需要曲線이며 品質 개선의 한계효용은 遞減함을 보여주고 있다. MR은 D에 대응하는 品質 개선의 한계수입 곡선이다. 完全競爭下에서 品質 개선의 選擇은 品質 개선의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一致하는 Q_c 에서 결정되며 반면에 獨占下에서 品質 개선의 選擇은 品質 개선의 한계비용과 독점공급자의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Q_m 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독점하에서 品質 개선은 경쟁하에서 보다 작게 되며 使用者 損失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⁶⁾ 특히, 品質 개선의 한계효용이 크게 減縮할수록, 즉 品質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非彈力的일수록 독점하에서 品質 개선의 정도는 경쟁하에서 보다 작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허제도 또는 資格制度를 통하여 서비스공급자를 규제하게 되는데 면허제도, 資格制度는 供給面에서 有效 경쟁을 制限하고 독과점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급의 독과점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서비스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⁷⁾ 건설은 先受注 後生産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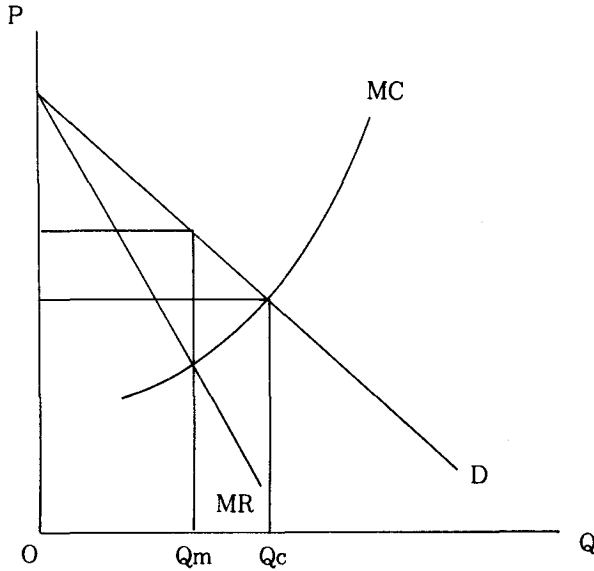
6)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독과점 상태에서는 진입이 자유로운 獨寡占競爭 상태보다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不足하게 된다는 見解가 있다.

(Scherer p 397). 또한 耐久性財貨 供給의 경우 독과점기업은 品質 선택을 할 때 내구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施設 및 技術投資에 대한 誘引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내구재가 공급된다는 것이다 (Coase, Schmalensee, Bulow).

7) 면허제도, 자격제도는 供給되는 서비스의 最少限度의 質을 보장하기 위한 裝置이나 빈번히 供給面에서 獨寡占을 誘發하여 서비스의 平均的 質을 下落시키는 傾向이 있다

<圖表 Ⅲ-1>

競爭 및 獨占下에서 品質改善의 選擇



를 취하기 때문에 건설물 수요자인 發注者는 공급자인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건설물을 제공받기 때문에品質面에서 불확실성이 크며 이에 따라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급자에 대한 규제는 발주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시장구조를 독과점상태로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國內建設産業의 市場構造를 把握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업체들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이 발간한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말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事業體數는 13,940個이며 이를 業種別로 구분하면 主로 附帶施設工事を 하는 전문직별 건설

업체가 13,470個,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건설업체가 316個, 2.3% 그리고 토목건축업체가 154개, 1.1%를 占하고 있다. 이를 從業員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10人未滿의 零細規模業體가 全體의 58.0%인 8,080個 업체로서 가장 많았으며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건설업체는 0.7%에 불과한 101個 업체로 나타나고 있다.

<表 Ⅲ-7> 從業員 規模別 事業體數

(단위 : 個, %)

	1986		1987		1988	
10人 미만	7,441	57.9	7,420	57.8	8,080	58.0
10 - 19	1,558	12.1	1,512	11.8	1,536	11.0
20 - 49	1,839	14.4	1,788	13.9	1,953	14.0
50 - 99	925	7.2	945	7.3	1,064	7.7
100 - 199	442	3.4	510	4.0	562	4.0
200 - 499	378	2.9	385	3.0	408	2.9
500 - 999	180	1.4	199	1.5	236	1.7
1,000人 이상	95	0.7	86	0.7	101	0.7
합 계	12,858	100.0	12,845	100.0	13,940	100.0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988.

<표 Ⅲ-8>은 1986-1988 기간중 종업원 규모별 공사액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종업원 1,000명이상의 대규모 건설업체의 공사액 占有率은 1986년 60.1%, 1987년 48.7%, 1988년 42.7%로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大型建設業體의 比重은 대단히 높다. 1988년도에 1,000명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업체수는 전체의 0.7%인 101개업체에 불과하나 이들의 工事額은 7조 658억원으로 총 공사액의 42.7%나 차지하고 있다.

<表 Ⅲ-8> 從業員 規模別 工事額

(단위 : %)

	1986		1987		1988	
	사업체수	공사액	사업체수	공사액	사업체수	공사액
10인 미만	57.9	1.4	57.8	1.8	58.0	2.2
10 - 19	12.1	1.7	11.8	2.1	11.0	2.3
20 - 49	14.4	4.8	13.9	5.9	14.0	6.8
50 - 99	7.2	5.5	7.3	6.3	7.7	7.5
100-199	3.4	4.9	4.0	6.9	4.0	7.4
200-499	2.9	10.7	3.0	13.5	2.9	13.1
500-999	1.4	10.9	1.5	14.8	1.7	18.0
1,000인 이상	0.7	60.1	0.7	48.7	0.7	42.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건설업 통계조사보고서, 경제기획원, 1988.

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내건설업체수만 고려하면 국내건설업이 독과점 상태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지 모른다.⁸⁾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국내건설시장은 공사금액, 지역, 工程別 등으로 分割되고 있다. 또한 국내건설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규모가 큰 政府工事의 경우에는 기존 대규모 건설업체들 사이에 담합을 통하여 工事物量이 分配되고 있는 수주관행을 고려할 때 국내건설시장의 시장구조는 統計値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독과점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위적인 건설시장의 분할(market segmentation)은 독과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分業과 專門化의 촉진에 逆機能을 하게 될 것이다.

8) 일본의 건설업체수는 1988년도에 51萬個에 이르고 있다.

(3) 엔지니어링서비스 供給

건설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서 건설공급에 投入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건설업체들은 建設物의 產出을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요소들 중에서 그들이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高度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그 供給을 先進國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高級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需要가 圓滑하게 供給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需要者인 국내 건설업체들은 급속히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건설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급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派生的 需要는 최종 건설수요가 요구하는 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⁹⁾ 둘째, 고급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대부분은 선진국, 즉 海外供給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規制로 인하여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현재 과학기술처에 登錄된 국내용역업체수는 555個이며 외국인투자 용역업체수는 16個에 이르고 있다. <표 Ⅲ-9>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最近 국내용역업체수는 急 伸張하고 있다. 1988년도 391개 업체에서 현재 571個업체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건설관련 용역업체는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 14개 그리고 전문기술중 건설기술 용역업체 302개, 총 316개 업체로서 전체업체중 5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엔지니어링 산업의 수주실적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1989년도 國內수주액은 9,29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88년도 수주액 4,879억원보다 90% 增加한 것이다. 이와 반면에 수출액은 1989년도 45백만달러로서 1988년도 80백만달러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國內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용역업체들이 국내공급에 注力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건설 용역업의 수주실적은 1988년도 559억으로부터 1989년도 1,212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건설기술부문 용역의 경우에는 1988년도

9) <圖表 Ⅲ-1>에서 說明하고 있는 바와 같이 獨寡占下에서 품질개선의 選擇은 경쟁상태보다 작게되며 이에 따라서 高級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派生的 需要도 相對的으로 減少하게 될 것이다.

<表 Ⅲ-9>

技術用役 登錄業體 推移

(단위 : 업체수)

	산업설비	종합건설	전문기술	개인기술	계
1976	-	8	26	95	129
1980	15	1	178	-	194
1983	15	3	155	21	194
1984	15	7	144	24	190
1985	14	7	195	55	271
1986	15	7	249	65	334
1987	15	7	243	62	327
1988	15	7	275	94	391
1990	15	14	422	120	571

자료 : 산업기술백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89.

엔지니어링분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응방안,
한국기술용역협회, 1990.

1,056억원에서 1989년도 1,478억원으로 40% 증가하였다. 1989년도 건설 관련용역 수주액은 2,690억원으로서 전체의 29.0%를 차지하였다.¹⁰⁾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規模는 대단히 零細하다. 1990년 5월 현재 국내 기술용역업체수는 571個社이며 이들의 1989년도 수주실적은 9,290억원으로서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약 16.3억원에 그치고 있고 특히 전문기술부문의 경우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하며 대단히 零細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기술용역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推進하지 못하였으며 전문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10) 엔지니어링분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응방안, 한국기술용역협회, 1990.

<表 Ⅲ-10>

技術用役 受注実績 推移

(단위 : 백만원)

		1986	1987	1988	1989
산업설비 용역업	국내	184,720	296,084	200,754	376,017
	국외	15,649	34,088	31,177	23,634
종합건설 용역업	국내	45,515	56,698	55,876	121,233
	국외	689	116	667	8
전문기술 용역업	국내	98,784	134,405	224,448	420,715
	국외	14,720	3,995	19,332	7,119
개인기술 용역업	국내	3,248	3,027	6,850	11,026
	국외	12	-	20	-
합 계	국내	332,268	490,214	487,928	928,991
	국외	31,070	38,200	51,206	30,761

자료 : 엔지니어링분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응방안, 한국기술용역협회, 1990.

한편, 日本 엔지니어링 振興協會가 조사 발표한 資料에 따르면 日本 綜合建設用役業體의 규모는 韓國종합건설용역업체에 비해서 技術人力面에서 약 10배, 수주액면에서 약 100배에 이르고 있다. 國內 14個 종합건설용역업체의 總 技術人力은 2,273명으로서 1社 平均 162명에 불과한데 비하여 日本의 21個 종합건설용역업체의 기술인력은 1988년 7월 1일 현재 32,763명으로서 1社 平均 1,560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주규모를 보면, 1989년도 國內 14개 종합건설용역업체의 총 수주액은 1,212억원, 1社 평균 87억원인데 비하여 1987년도 日本 17개 종합건설용역업체의 총 수주액은 2조 9,865억엔, 1社 평균 1,757억엔을 기록하고 있다.¹¹⁾ 建築設計 분야에서도 國內설계사무실의 규모는 外國설계회사에 비해서 대단히 零細하다. 現在 國內건축사사무실 등록자는 약 3,300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에서 50명 이상의 人力을 保有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실은 10개

11) 엔지니어링분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응방안, 한국기술용역협회, 1990.

엔지니어링 산업의 실태와 동향, 일본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1988.

에 불과하다. 반면에 한국에 進出하는 외국 설계회사의 규모는 綜合事務室의 경우 500-1,000명, 專門事務室의 경우 50-100명의 人力을 보유하고 있다.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국내기술용역업체들의 技術能力 부족으로 인하여 고급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高度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외국용역발주가 허용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내엔지니어링 발주는 국내엔지니어링업자를 主契約者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先進國의 엔지니어링 서비스공급은 制約을 받고 있다. 물론 이는 국내기술용역업체들에게 國內 엔지니어링 수요를 確保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育成하고자 하는 目的을 갖고 있다. 그러나 國內市場 보호는 기술 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에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의 부담을 높히게 된다. 한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외국기술용역의 도입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은 재무부장관에게 신고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술용역이 기술도입계약의 형태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¹²⁾

4. 韓國建設産業의 産業聯關關係

國際去來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特徵은 첫째, 서비스의 產出에는 기술, 知識, know-how 등 人的資本要素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둘째, 최근에 국제거래가 급증 추세에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재화 또는 여타 서비스의 산출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교역 확대 및 自由化는 競爭의 促進, 시장의 擴大에 따르는 專門化, 分業化 등을 통하여 결국 供給되는 서비스의 品質을 向上시킬 것이며 이는 聯關産業

12)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도입 실적은 1989年度 1억 89백만달러로서 1988년도 2억 32백만달러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기술용역대가 지급액은 1988年度 6억 76백만달러에서 1989년도 9억 30백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의 生産效率 增進과 窮極의으로 소비자효용 提高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努力은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을 促進시키는 誘發效果를 갖게 될 것이다.

建設業의 산업연관관계를 把握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投入 產出 構造를 여타 서비스와 비교해 보면 산출구조면에서 볼 때 건설활동으로 부터 산출되는 다양한 건설물들은 주로 자본재로 이용되며 투입구조면에서는 일반적으로 施工分野는 중간재 및 單純人力의 투입비중이 높으나 설계, 감리 등과 같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技術 및 高級人力集約의 性格을 갖고 있다.

(1) 產出構造 및 前方聯關效果

건설은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형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Ⅲ-11>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고정자본형성의 자본재 형태별 구성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50%를 약간 上廻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 계정으로 부터 계산해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9년도 총 고정자본형성액은 44조 7,782억원이며 이중 주거용건물 7조 7,701억원, 비주거용건물 8조 8,588억원, 기타구축물 7조 3,065억원을 차지함으로써 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比重은 53.5% 에 達하고 있다.

<表 Ⅲ-11> 固定資本形成의 資本財 形態別 構成推移

(단위 : %)

	1975	1980	1985	1987	일본(1985)
기계류	41.5	35.9	34.5	41.1	32.3
건설	50.8	56.9	57.9	51.9	58.2
기타	7.7	7.2	7.6	7.0	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1988.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 12.

이처럼 건설활동을 통하여 산출되는 다양한 建設物들, 즉 建物, 工場, 構築物 등은 대부분, 즉 80% 이상이 고정자본형성에 利用되며 약 10% 정도는 餘他財貨 또는 서비스의 產出에 投入된다. 따라서 건설업의 中間需要率は 餘他서비스업 또는 製造業에 비해서 아주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1987년도 제조업의 中間수요율은 54.3%이며 서비스업은 39.2%인데 비하여 건설업의 中間수요율은 11.2%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서비스가 餘他서비스 또는 재화의 경우와는 달리 中間財로 投入되기 보다는 주로 固定資本形成에 利用되기 때문이다.

<表 Ⅲ-12> 産業別 中間需要率 推移

(단위 : %)

	1975	1980	1985	1987	일본(1985)
농림어업	77.4	72.6	67.4	70.0	79.2
광업	93.8	99.7	100.2	102.9	99.5
제조업	47.9	55.0	56.1	54.3	60.5
건설	9.2	9.9	9.9	11.2	9.5
서비스업	37.6	37.9	38.4	39.2	41.0
全産業平均	49.1	51.4	50.9	50.1	50.6

자료 :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1988.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 12.

건설서비스는 중간재로 크게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말하는 前方效果는 여타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서 낮다. <표 Ⅲ-13>는 1987년도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産業別 感應度係數이다. 감응도계수란 모든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씩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산업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을 전산업 평균산출액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비율로서 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指標이다. 1987년도 건설업의 감응도계수는 0.57로서 제조업의 2.07 그리고 서비스업의 1.04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감응도계수가 큰 산업은 제조업중에서

는 석유화학제품(2.53), 금속1차제품(1.72), 금속제품 및 기계(1.52) 등 기초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생산함으로써 그 산업의 제품이 여타 산업의 中間財로 널리 사용되는 부문들이며 서비스업중에서는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감응도계수가 1.26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表 Ⅲ-13> 1987年度 産業別 感應度係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전산업평균
0.72	0.58	2.07	0.57	1.04	1.00

자료 :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 12.

(2) 投入構造 및 後方聯關效果

건설은 餘他서비스업에 비해서 세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및 설계, 監理,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많은 중간재의 投入을 필요로 한다. <표 Ⅲ-14>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87년도 건설의 중간 투입율은 60.2%로서 제조업평균 73.5%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서비스업 평균 38.4%를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건설의 소위말하는 後方效果는 서비스업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Ⅲ-14> 産業別 中間投入率 推移

(단위 : %)

	1975	1980	1985	1987	일본(1985)
농림어업	24.5	30.4	33.3	32.8	50.1
광업	30.6	31.4	38.5	37.1	42.8
제조업	77.2	77.2	75.2	73.5	74.1
건설	64.2	59.0	60.1	60.2	64.4
서비스업	36.2	41.2	39.7	38.4	33.1
전산업평균	57.5	60.4	58.6	58.0	60.2

자료 :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1988.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 12.

<표 III-15>은 1987年度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産業別 影響力係數를 보여주고 있다.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해서 최종수요가 1 단위 발생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산업에서 유발되는 산출액을 전산업 평균산출액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비율로서 後方連鎖效果의 정도를 나타낸다. 1987년도 건설업의 영향력계수는 1.06으로서 제조업평균 1.32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서비스업평균 0.87보다 높으며 서비스업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表 III - 15> 1987年度 産業別 影響力係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전산업평균
0.83	0.88	1.32	1.06	0.87	1.00

자료 :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89. 12.

또한, 건설업의 후방효과를 나타내는 生産誘發係數는 농림어업, 광업 및 서비스부문 등은 낮은 반면, 제조업과 건설부문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¹³⁾ 이는 제조업과 건설부문이 농림어업, 광업 및 서비스업에 비해서 생산의 迂迴度가 높기 때문이다. 1987년도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4로서 제조업의 1.98, 여타 서비스업의 1.60보다 높은 수준이다.¹⁴⁾

건설업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直·間接으로 유발되는 附加價値를 나타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 등이 높고 原材料의 수입의존도가 타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 및 목제품, 석유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 제조업부문이 낮게 나타났다. 건설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업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의 수입의존도가 다른 서비스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1987년도 건설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0이며 이는 제조업의 0.66보다 높으나 여타 서비스업의 0.8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¹⁵⁾

13)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함에 따라 全産業에서 直·間接으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14)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987.

15)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987.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을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경우에 제조업보다 낮으나 여타 서비스업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7년도 건설업의 수입유발계수는 0.20이며 제조업과 여타 서비스업은 각각 0.34, 0.12를 기록하고 있다.¹⁶⁾

한편, 건설은 국가간 교역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업중에서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6>는 산업연관표에서 계산된 산업별 고용유발계수이다.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는 어느 산업부문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直·間接으로 유발되는 雇傭效果를 나타낸다. 1985년도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2이며 이는 운수·보관·통신서비스의 8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78보다 높으며 제조업평균 10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表 III-16> 産業別 雇傭誘發係數 (1985년)

(단위 : 각/10억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78	152	105	101	140

자료 : 1985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 한국은행, 1988.

建設業의 산업연관관계에 대한 分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特性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前方聯關關係에서 건설은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中間財로서 사용되는 비중은 微微한 반면에 자본재로서 이용되는 비중이 크다. 둘째, 後方聯關關係에서 건설은 건설자재등 중간재의 투입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에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셋째, 건설자재를 비롯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그리고 건설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결론적으로 건설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며 따라서 최근에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건설수요 패턴에 국내건설공급이 탄력적으로 對應할 수 있다면 그 經濟的 波及效果는 대단히 클 것이다.

16)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1987.

IV. 韓國建設産業에 대한 規制制度 및 政策

서비스의 중요한 特性은 使用者保護를 目的으로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많은 規制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規制들은 국가마다 特殊事情을 反映하여 서로 相異하며 이것이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막고 있는 障礙要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교역 확대에 중요한 關鍵은 어떻게 各國이 對立을 止揚하고 相互協力을 통하여 相異한 規制들을 緩和 또는 調和 (harmonization) 시킬 수 있는 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餘他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建設서비스의 공급 및 공급자에 대해서는 많은 規制들이 賦課되고 있다. 建設産業에 관련되는 國內規制들은 多樣하다. 크게 나누어볼 때 國內建設에 대해서는 建設業法,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海外建設促進法, 그리고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해서는 技術用役育成法이 있으며 이외에도 建築士法, 電氣工事業法, 電氣通信工事業法 등이 있다.

건설산업에 관련된 國內法規들은 行政規制의 便宜를 위하여 지나치게 細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相互 有機的 連結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過去에는 施工이 건설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壓倒的이었으나 점차로 건설수요의 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됨에 따라서 設計, 監理 등과 같은 건설 엔지니어링 分野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처럼 건설공급의 性格이 單純施工으로 부터 綜合生産으로 변화하는데 對應하여 건설관련 規制들도 그 整備 改善이 요구되고 있다.

建設關聯規制들의 目的을 살피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법은 建設工事의 適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수주의 촉진과 해외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 건축사법은 건축물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인력의 자질향상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規制목적으로부터 두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건설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規制 또는 資格制度를 통하여 공급되는 건설서비스의 質을 保障하고 使用者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建設

關聯産業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本章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國內規制들에 관하여 두가지 側面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산업 관련 國內규제들이 使用者를 保護하는데 얼마나 效果的인가. 둘째, 건설관련 國內규제들이 國內건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급속하게 고급화 다양화추세에 있는 國內건설수요를 충족하는데 얼마나 效果的인가.

1. 建設에 대한 規制

建設에 대한 規制는 國內건설에 대해서 建設業法, 해외건설에 대해서 海外建設促進法으로 二元化하고 있다. 규제내용을 보면 크게 進入에 대한 규제, 受注에 대한 규제, 生産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진입에 대한 규제로서는 國內건설 免許제도와 해외건설 免許제도가 있으며 수주에 대한 규제로서는 國內건설에 대한 都給限度制와 入札제도 그리고 해외건설에 대한 도급허가제와 진출지역제한제가 있으며 생산에 대한 규제로서는 國內건설에 대한 하도급제도와 전문건설업제도가 있다.

	진 입	수 주	생 산
國內건설	면허제도	도급한도제 입찰제도	하도급제도 전문건설업
해외건설	면허제도	도급허가제 진출지역제한	

자료: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1) 國內建設

가. 免許制度

國內건설 면허제도는 1958년 建設業法の 制定과 함께 導入되었다. 건설면허제도의 導入 動機는 무엇보다도 施工質을 保障하고 발주자를 保護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의 특성은 先受注 後生産의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工事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品質의 불확실성이 높고 발주자가 損害를 부담할 위험이 크다. 이와같은 품질의 불확실성 및 발주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급자인 건설업자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 면허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면허제도의 實施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초 한국건설업계는 부실업체의 난립과 부실시공이라는 混亂을 經驗하게 되었다. 이를 막기위한 方案으로서 정부는 1974년 建設業 新規免許의 發給을 중지하였다. 그러나 이 方法이 當時 問題를 解決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疑問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규제강화 또는 면허기준의 강화가 좀 더 효율적인 代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건설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중등건설경기的好況으로 인하여 비약적인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건설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新規 國內건설면허는 계속 凍結되었다. 신규면허의 發給을 중지하는 措置는 1974년부터 1988년말까지 長期間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면허에는 프리미엄이 發生하였으며 일반건설면허의 경우 약 6-7억원, 전문건설면허의 경우는 10백만원-30백만원에 去來되는 免許 貸與行爲가 나타나게 되었다.¹⁾ 이 프리미엄, 즉 地代(rent)는 발주자에게 轉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허를 借用하는 건설업자의 負擔으로 歸着될 것이다. 결국 신규면허의 동결조치는 既存 면허업체들에게 非生産的인 不勞所得을 획득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신규업체의 참여를 制限함으로써 발주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발주자의 부담을 加重시키는 結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建設業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건설 면허제도는 오랫동안 改善되지 못하였다. 結局 1988年末에 급속히 擴大되는 國內건설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장차 國內건설산업의 國際化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이 改正되고 신규면허 동결조치가 解除되었다.²⁾ 이에 따라 신규면허 業體數는 急增하였다. <표 IV-1>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88년말 免許所持 業體數는 468개 업체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免許數는

1)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2) 1985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은 건설업법에 대한 再檢討를 촉진시키는 契機가 되었다고 한다.

669개 이었으나 1989년말에는 면허소지 업체수 924개, 면허수 1,298개로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表 IV-1> 一般 및 特殊建設業免許 推移

	合 計		一般免許	特殊免許
	면허수	업체수	면허수	면허수
1973	769	707	706	63
1974	731	669	667	64
1975	707	646	643	64
1976	632	554	550	82
1977	611	534	529	82
1978	604	527	523	81
1979	614	522	514	100
1980	622	517	510	112
1981	622	505	498	124
1982	716	507	495	221
1983	720	506	494	226
1984	716	504	492	224
1985	696	492	481	215
1986	687	483	473	214
1987	683	480	471	212
1988	669	468	460	209
1989	1,298	924	907	398

자료: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구조, 국토개발연구원, 1989. 12.

1988년말 改正된 建設業法에서 국내건설면허에 關聯되는 重要な 規制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법에 의거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업법 6조).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다시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특

수건설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목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등 19개 業種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건설업의 면허기준으로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건설업법 7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 실적, 임원의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의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법시행령 10조).

셋째,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와 전문건설업면허는 한사람이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건설업법 8조), 일반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전문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다 (건설업법 12조).

건설업 면허제도의 根本的인 目的은 受注後 제공되는 건설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인 發注者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발주자보호는 결국 공급자인 건설업자를 刺戟하고 建設物의 品質向上을 誘導하여 建設業의 育成과 發展을 圖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現行 건설면허제도는 발주자보호에 未洽하며 국내건설시장을 人爲的으로 分割함으로써 공급되는 건설물의 품질개선을 沮害하는 문제점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3년마다 更新을 요구하는 現行 면허제도에서는 기술, 자본, 경험이 면허기준으로서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는 施工質을 保障하고 발주자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술, 자본, 경험에 관한 면허기준을 충족한 건설업체도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 자본, 경험에 관한 면허기준은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形式的으로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술자격 면허의 대여행위 등을 통하여 면허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기술, 자본, 경험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관한 의사결정은 면허조건 충족과는 별개로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기술, 자본, 경험을 면허기준으로서 중요시하는 現行 건설면허제도는 발주자보호보다는 유망한 신규건설업체의 참여를 制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 強化된 면허기준은 진입장벽을 높히고 있으며 진

입장벽은 유효경쟁 (effective competition) 을 막기 때문에 소비자효용 증대 또는 발주자보호에 逆作用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잠재력이 있고 유망한 신규 건설업자가 면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건설업에 진입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면에서의 손실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를 좀 더 효과적으로 保護할 수 있도록 現行 건설면허제도의 補完 및 改善이 要求되고 있다. 工事契約의 不誠實履行, 不實工事 등을 防止할 수 있는 좀 더 直接的인 발주자 保護方案이 면허기준 또는 면허제도에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現行 건설 면허제도는 건설산업의 專門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대단히 細分化된 業種別 면허를 要求하고 있으며 同一 건설업자에 대한 重複 免許를 制限하고 營業範圍에 대해서 規制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을 分割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専門化를 遲延시키는 逆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국내건설시장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分業 및 專門化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의한 人爲的인 專門化가 필요하였을 지 모른다. 그러나 국내건설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分業 및 專門化는 經濟的 動機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效率的이며 인위적 専門化는 不必要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現行 건설업법은 효율적인 専門계열화 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의무화³⁾,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범위의 확대⁴⁾, 하도급자에 대한 不公正행위의 금지⁵⁾ 등을 規定하고 있으나 效果的인 方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수요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서 施工의 専門化와 系列化가 緊要하게 要求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공급면에서 위험부담이 크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下都給制度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效率的인 専門계열화 체제는 국내건설산업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도급의 의무화는 行政上 名分 또는 便宜에는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専門계열화를 위하여 얼마큼 實效性

3) 建設業法 第22條의 2.

4) 建設業法 第28條.

5) 建設業法 第31條.

이 있을 지는 疑問이다. 原則的으로 專門系列化 體制는 市場機能에 의해서 形成되도록 하는 것이 效率의 일 것이며 政府規制는 大型建設業體의 독과점 및 불공정행위의 抑制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상 어려움이 豫想되나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전문계열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國內건설산업의 國際化를 促進시키기 위한 趣旨에서 1988년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건설업법에서 외국인이 국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989년 7월 18일 개정된 건설업법시행규칙에서 건설업면허 신청을 할 때 외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외국인등록표등본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업법시행규칙 3조).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면허기준을 충족시키고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즉, 면허기준중에는 국가 자격고시에 합격한 기술인력의 보유 및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영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外國인이 國內 國家資格考試에 합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⁶⁾

나. 都給限度制度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特性은 서비스시장을 人爲的으로 분할(market segmentation) 하는 것이다.⁷⁾ 건설업법에서도 여러가지 趣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을 분할하고 있다. 첫째, 過當競爭의 방지와 施工質의 확보를 위하여 도급한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둘째, 中小建設業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都給下限額을 規定하고 있다. 셋째, 地方 建設業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세가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都給限度制度

건설업법에서 都給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約定

6) 외국 건설업체는 국내 기술인력을 雇傭함으로써 국내 면허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국내에 進出한 외국 건설업체는 合作投資 形態로 日本의 롯데建設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2個 건설업체가 國內에 事務所를 설치하고 있다.

7) 예컨대, 金融業, 海運業에서 市場分割을 초래하는 많은 規制 制度를 發見할 수 있다.

하고, 相對方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代價를 支給할 것을 約定하는 契約을 말한다. 商品의 賣買契約과 유사한 것이다. 건설공사의 도급한도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가 공사발주자로 부터 도급받을 수 있는 1件工事의 수주상한액을 말한다. 건설업법은 過當경쟁의 방지 및 施工質의 확보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에 따라 1件 공사의 수주 상한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업법 17조). 건설부장관은 모든 건설업자에 대해서 매년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1件 공사의 도급한도액을 결정한다 (건설업법시행령 22조).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재무구조, 기술개발투자실적 등의 종합적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전문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전문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설업법시행령 26조).

1989년도 463個 建設業體에 대한 都給限度額의 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IV-2> 1989年度 土木, 建築工事業 都給限度額 規模別 分布現況

	업체수	비율 (%)	누계업체수	누계비율 (%)
5,000억원 이상	1	0.22	1	0.22
3,000억원 - 5,000억원	3	0.65	4	0.86
1,000억원 - 3,000억원	13	2.81	17	3.67
500억원 - 1,000억원	14	3.02	31	6.70
100억원 - 500억원	71	15.33	102	22.03
70억원 - 100억원	45	9.72	147	31.75
50억원 - 70억원	133	28.73	280	60.48
30억원 - 50억원	112	24.19	392	84.67
25억원 - 30억원	17	3.67	409	88.34
20억원 - 25억원	24	5.2	433	93.5
15억원 - 20억원	12	2.6	445	96.11
10억원 - 15억원	12	2.59	457	98.70
8억원 - 10억원	2	0.43	459	99.14
8억원 미만	4	0.86	463	100.0
계	463	100.0		

자료: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都給限度制는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과당경쟁의 방지가 목적이나 오히려 의도와는 달리 덤핑행위를 유발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次年度 도급한도액을 늘이기 위하여 공사 실적만을 목적으로 덤핑행위를 할 수 있다. 둘째, 都給限度制는 공사규모별로 소위 말하는 이동장벽 (mobility barrier) 을 과생시키며 이에 따라 잠재력이 큰 유능한 신규 건설업자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이는 기존 대형건설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都給限度制는 대형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談合行動 (collusion) 을 유발시킨다. 담합행동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역기능을 할 것이다. 넷째, 외국건설업자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외공사 실적의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건설업자들에게 해외공사 실적을 인정해 준다면 도급한도제로 인한 외국건설업자들의 독과점이윤 획득이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B. 都給下限額制度

건설업법은 中小건설업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도급한도액이 일정액이상인 일반건설업자에 限하여 도급금액의 下限을 결정한다 (건설업법 17조, 건설업법시행령 25조). 이는 대형건설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영역인 소규모공사의 수주를 制限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도급하한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는 도급한도액과 도급하한금액 사이의 공사만을 수주할 수 있다.

최근 建設部가 결정한 대형건설업체들의 1件工事 도급하한액은 <표 IV-3>에서 보여주고 있다. 도급순위 126위까지의 대형업체들이 도급한도액에 따라서 6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각등급 해당업체의 1件當 도급하한액은 1억5천만원 부터 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인위적인 시장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얼마큼 實效性을 갖고 있는지 疑問이다. 1988年度 都給下限의 대상이 되는 工事は 全體工事的 약 7%, 公共工事的 21%에 不過하다.⁸⁾

8)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表 IV-3>

1990年度 建設工事 都給下限額

도급순위	도급한도액	도급하한액	해당업체수
1-9	2,000억원이상	13억원	9
10-20	900억원이상 2,000억원미만	10억원	11
21-38	500억원이상 900 억원미만	7억원	18
39-58	300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5억원	20
59-79	200억원이상 300 억원미만	3억원	21
80-126	120억원이상 200 억원미만	1.5억원	47
	합 계		126

자료: 중앙경제신문, 1990. 8. 3.

都給下限制를 통한 시장분할과 경쟁제한은 零細規模의 신규 중소기업체의 過多한 참여를 유발하며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⁹⁾ 이처럼 政策意圖와는 달리 중소기업체가 발전·육성되지 못하고 영세성을 脫皮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 및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實效성이 크지 못한 都給下限制보다는 하도급관계에서 대형건설업체의 횡포 또는 불공정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대형건설업체들간에 담합의 誘引이 되고 있는 도급한도제도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C. 地域制限制度

지역제한제도는 地方所在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趣旨에 따라서 豫算會計法은 정부발주 공사중 일반건설공사는 10억원, 전문건설공사는 5,000만원미만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구역내 건

9) 물론 중소기업체는 많은 單純人力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하한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雇傭機會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肯定的인 効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고용문제는 개별산업에 대하여 中立的인 性格을 갖는 정책수단, 예컨대 거시경제정책으로 對處하는 것이 衡平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설업자에게 제한경쟁입찰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표 IV-4>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公共建設工事 발주액은 地域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특정 소재 지방 건설업자에게 不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역제한제도는 지방소재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데 効果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설시장을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경쟁을 제한시키는 逆機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表 IV-4> 1987年度 公共建設工事의 地域別 契約實績

(단위: 10억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8,766	5,900	334	266	86	307	134	174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9	138	390	315	338	45		

자료: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 1990.

다. 入札方式

建設物の 공급 및 가격결정 방식은 財貨의 경우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건설물의 수요자인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물은 물리적 형태 뿐만 아니라 기능, 위치 등에서 다양하며 따라서 재화와 같이 표준화하기 어렵다. 이처럼 個別 건설물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相異하기 때문에 가격결정 및 공급계약은 개별건설물에 따라 別個로 이루어진다.¹⁰⁾

建設工事의 계약방식은 크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隨意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다. <표 IV-5>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88년도 건설공사 계약액 9조 9,220억원중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계약

10) 이와같은 방식을 통하여 건설업자에게 수요가 보장됨으로써 위험부담이 감소되고 발주자에게는 그가 원하는 건설물이 제공될 수 있다.

<表 IV-5>

國內 發注機關別 契約方式

(단위: 10억원,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합계
정부기관	137 (13)	252 (24)	131 (12)	544 (51)	1,064 (100)
지방자치단체	251 (19)	508 (39)	86 (7)	460 (35)	1,305 (100)
공공단체	61 (16)	162 (42)	51 (13)	115 (29)	390 (100)
국영기업체	66 (6)	347 (29)	489 (41)	298 (25)	1,199 (100)
주한외국기관	9 (9)	16 (16)	66 (65)	11 (11)	101 (100)
민 간	89 (2)	129 (2)	922 (16)	4,723 (81)	5,862 (100)
합 계	612 (6)	1,415 (14)	1,744 (18)	6,151 (62)	9,922 (100)

주: 1. 1988년도 기준.

2. ()는 구성비.

자료: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액은 6조 1,510억원으로서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民間 발주의 경우에는 81%가 수의계약 방식을 擇하고 있다. 또한 <표 IV-6> 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공사규모가 클수록 隨意契約 방식을 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隨意契約이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으로 選好되고 있는 理由는 공사 발주자의 입장에서 이 契約方式이 건설공사의 質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 건설공사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反證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내 건설시장구조의 특수성에도 一部 基因하고 있을 것이다. 국내 財閥의 대부분은 건설업체를 所有하고 있으며 이들이 遂行하는 工事중에서 緣故工事는 隨意契約 方式을 取할 것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를 發注處에 따라 구분하면 민간공사의 비중은 약 60%, 정부공사의 비중은 4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민간공사의 비중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공사의 경우에 계약방식은 자유계약원칙에 따라서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물을 공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선택

<表 IV-6> 契約方法別 工事規模別 分布

(단위: 10억원)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합계
1,000만 미만	2	3	1	16	21
1,000 - 3,000만	34	47	5	37	123
3,000 - 5,000만	40	60	7	48	155
5,000 - 1억	66	100	14	117	279
1억 - 5억	198	299	137	868	1,502
5억 - 10억	124	203	149	669	1,146
10억 - 30억	83	274	489	1,328	2,175
30억 - 50억	24	157	327	746	1,254
50억 - 100억	11	93	298	784	1,187
100억이상	31	178	317	1,537	2,062
합 계	612	1,415	1,744	6,151	9,922

주: 1988년도 기준.

자료: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간여는 契約의 誠實履行, 不實工事의 防止, 紛爭解決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 보다는 자유계약원칙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반면에 정부공사의 경우에는 公開 競爭入札 방식이 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공사는 민간공사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고 공사대금 지급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공사 발주자의 독과점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와는 달리 官工事의 경우 부정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계약방식은 모든 건설업자들에게 工事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公正하게 부여하는 것이 緊要하다. 특히, 외국건설업자들이 국내건설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정부공사 참여는 쟁점으로 제기될 소지가 크다.

정부공사의 입찰방식은 일반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진다. 정부공사의 계약제도는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의 도급계약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但書 규정을 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76조).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대규모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도급한도액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갖고 있는 건설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이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제를 도입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90조).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예산회계법시행령 93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낙찰자 선정방법으로는 첫째, 최저가격 낙찰제 둘째,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인 부찰제 셋째, 설계점수를 감안한 최저가 낙찰제 넷째, 차관계약에 적용되는 국제관례를 들 수 있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다만,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순차로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에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최저가격으로 적격관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99조).

한편, 公共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는 조달청은 일반건설업체를 도급한도액기준으로 5개의 제한군으로 편성하고 각 제한군별로 예정금액기준으로 상한공사액과 하한공사액 범위에서 입찰을 배정하며, 상위업체로부터 30개업체씩 순차 일련회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달청의 제한군제도는 대형업체들간에 담합을 조장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¹¹⁾ 특히, 외국 건설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이 제한군제도에 참여를 요구할 때 쟁점이 될 소지가 크다.

11) 건설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KDI, 1990.

(2) 海外建設

海外建設은 한국건설업의 발전에 커다란 寄與를 하였다. 1975년에 制定된 海外建設促進法은 해외건설수주의 촉진 및 해외건설공사의 適正한 施工의 圖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에 관한 정부규제는 국내건설에 대한 규제와는 性格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해외건설에 대해서는 첫째,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支援制度 둘째, 과당경쟁 및 부실공사를 防止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게 부과되는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建設産業에 대한 支援制度

첫째, 해외건설업자를 "수출입업자"로 看做하고 수출입업자에 제공되는 모든 정부의 지원제도는 해외건설업자에게도 適用된다. 해외건설촉진법 제 23조는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貿易去來法, 信用保證基金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자"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은 해외건설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제도, 해외사업손실준비금제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기계, 장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통하여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해외건설공사보험제도, 해외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推進에 따라서 수출지원은 一般의으로 縮小되는 趨勢에 있으므로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¹²⁾ 또한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외국의 各種 規制들, 差別的 受注 慣行, 人力을 비롯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은 해외건설수출을 制約하고 있는 심각한 障礙要因이 되고 있다. 예컨대, 日本의 경우, 國內 建設업체가 日本에서 建設면허를 取得해도 日本業界의 慣行으로 日本內에서 下請業體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수행이 不可能한 實情이다. 해외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效果的인 方法은 수출지원의 방식보다는 協商을 통하여 建設서비스 交易에 대한 障礙要因을 緩和 또는 除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시책이 해외건설수출 증대에 얼마큼 效果的인지는 불확실하다.

나. 海外建設 免許制度

現行 海外建設 免許制度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건설업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營業의 種類별로 建設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해외건설업의 營業의 種類는 8種, 즉 綜合建設업, 一般建設업, 特수 公事業, 造景公事業, 전기公事業, 전기통신公事業, 建設용역업, 해외공사수주업으로 區分되고 있다. 해외건설업의 免許기준으로서는 技術能力과 資本金이 고려되며 해외건설업의 免許를 받을 수 있는 者는 첫째, 建設업법에 의하여 建設업의 免許를 받은 者 둘째, 전기公事業법에 의하여 전기公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 및 전기통신公事業법에 의하여 전기통신公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셋째,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登錄을 한 者 및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者로 制限되고 있다. 이와같이 海外建設 免許제도는 國內建設 免許제도에 비해서 嚴格하게 유지되고 있는 데, 이는 해외건설업자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외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물론, 海外 建設시장에서 한국건설업체들간에 가격경쟁은 국가적으로 損害를 招來할 것이며 不實工事は 對外信用을 損傷시킬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免許제도의 維持는 신규 建設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건설 免許업체수는 1983년 이후 해외건설 경기의 침체와 함께 免許취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免許업체수는 1983년에 132개 업체에 達하였으나 1985년 95개 업체, 1989년에는 75개 업체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해외건설 경기가 다소 回復되고 있으나 국내 建設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擴大하기 보다는 好況을 누리고 있는 국내 建設시장에 注力하고 있는 實情이다.

<表 IV-7>

海外建設 免許業體數 推移

1979	198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32	105	99	95	93	81	77	75

자료: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建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김수용, 한국개발연구원, 1988.

建設업 경쟁촉진 정부규제 개선방안, 김지홍, 한국개발연구원, 1990.

海外建設免許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성과는 1983년 이후에 대단히不振하였다. 해외건설시장에서 한국건설수출의 비중은 1980년대초에는 10%를 넘었으나 1988년에는 1.6%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는 중등건설시장의 침체 등 여러가지 이유에 基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노력이 不足하였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危險負擔이 크며 해외시장에서 발주자들은 점차로 금융지원,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保證 등 많은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축소되어 왔으며 특히 중등건설시장의 衰退로 인하여 많은 損害를 입은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忌避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면허업체는 大部分이 대형건설업체이며 이들은 最近에 급속히 擴大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해외 건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誘引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건설 면허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新規免許의 發給을 中止하고 있는 것은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해외건설 면허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에 참여하게 허용하는 것이 해외건설수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상품수출의 경우에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伸張하고 있음은 해외건설의 경우에 좋은 示唆를 하고 있다.¹³⁾

2. 엔지니어링 産業의 育成 政策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1973년에 技術用役育成法이 制定되었다.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규제보다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보호 육성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13) 海外建設의 新規免許 發給은 장기간 凍結되었는데 건설부는 지난 6월 해외건설 신규면허 申請을 받고 8월과 9월에 總 104개 業體에 132건의 신규면허를 發給하였다.

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영업의 종류별로 과학기술처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 기술용역업은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용역업, 전문기술용역업, 개인기술용역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登錄의 기준으로서는 기술 및 자금능력이 고려되고 있다.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은 外資導入法에 의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者로 부터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인 가 과정에서 외국인 持分이 50% 이상일 때는 과학기술처 장관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1989년말 현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외국인투자 기술용역업체수는 16개 업체에 達하고 있다.

고급 기술용역에 대한 국내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急伸張하고 있는 기술용역업체수 및 기술용역수주액으로 부터 알 수 있다. 기술용역업체수는 1988년 391개 업체에서 1990년 5월 현재 571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國內기술용역수주액은 1988년도 4,879억원으로 부터 1989년도에는 9,290억원으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규모는 대단히 零細하고 기술수준도 落後되어 있는 實情이다.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의 不均衡 狀態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산업은 기술축적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외부효과가 크다는 理由로 국내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으로 부터 保護하고 있다. 국내기술용역산업을 保護 育成하기 위하여 技術用役法上 主契約者制度和 外國用役發注承認制度가 導入되어 實施되고 있다.¹⁴⁾

(1) 主契約者制度

기술용역육성법은 국내에서 발주되는 용역은 原則적으로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기술용역업체에게 국내용역의 供給機會를 확대하여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의 외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계약

14) 最近 政府는 1991년 上半期中에 기술용역육성법을 改正하여 現行 기술용역 登錄制를 申告制로 전환하고 외국 기술용역 導入에 대해서도 現行 승인제를 事前 申告制로 바꾸기로 決定하였다 (每日經濟新聞, 1990. 9. 29.).

자제도를 통하여 얼마큼 효과적으로 國內기술용역업체들의 기술습득, 기술개발을 促進시킬 수 있는나는 不確實하다. 오히려 이 制度下에서 國內기술용역업체는 國內용역의 공급은 外國업체에게 下都給주고 主계약자라는 권리로 부터 발생하는 소위말하는 지대(rent)만을 追求할 가능성이 높다. 國內에 零細規模의 용역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存在하고 있는 것은 이와같은 地代가 존재하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이와같은 地代의 發生으로 인하여 기술용역의 代價는 上昇할 것이며 사용자 負擔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2) 外國用役 發注 承認制度

기술용역육성법은 國內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의 承認을 얻어 外國환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外國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外國용역발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한 과학기술처장관은 國內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條件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外國용역의 공급에 대한 制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限措置들의 实效性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外國용역을 외자 도입법상 기술도입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기술도입계약은 재무부장관에게 申告만이 요구되고 있고 기술도입에는 租稅減免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外國용역발주승인제도의 根本的인 문제점은 外國으로 부터 고급 용역의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使用者損失이 크다는 것이다.

3. 技術資格制度

技術資格制度의 目的은 建設物의 품질을 보장하고 建設물에 대한 需要者인 發注者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技術士 또는 技術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依據해서 技術資格檢定試驗에 合格한 者에게 그 資格이 부여되며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시험에 합격한 者에게만 免許가 發給된다. 이와같은 기술자격 제도는 技術人力의 資質向上을 誘導하는데 效果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자격제도는 技術人力에 대한 需要者에게 올바른 情報를 提供하여 수요자를 보호하게 된다.

건설업법, 해외건설업법, 그리고 기술용역육성법은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保有를 免許基準 또는 登錄基準으로서 要求하고 있다. 이와같이 면허발급 또는 등록의 要件으로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保有를 義務化하는 것은 기술사 또는 건축사에 대한 需要를 증가시킴으로써 窮極적으로 기술인력의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肯定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사용자보호를 위하여 資格을 갖고 있는 기술인력의 保有를 義務化시키는 規定은 地代(rent)의 發生을 招來하게 된다. 특히, 資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地代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기술자적의 貸與行爲 또는 地代追求活動 등은 건설공급자 및 사용자에게 대한 부담만을 加重시키는 副作用이 크다. 特히, 외국건설업체의 國內시장 進入이 許容될 때 기술자격의 대여행위는 더욱 심각해 질 可能性이 큰 것이다. 따라서 기술자격제도 自體는 必要하나 면허기준으로서 資格을 갖고 있는 기술인력의 保有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자격대여 행위 등으로 實效성이 작으며 반면에 地代추구활동에 따르는 副作用이 크다고 볼 수 있다.¹⁵⁾

15) 最近 政府는 기술용역업에서 新規創業을 促進하고 技術士 스카우트에 따르는 副作用을 해소하기 위하여 技術人力 保有에 관한 登錄基準을 緩和하기로 하였다 (每日經濟新聞, 1990. 9. 29.).

V. 韓國 建設市場 開放의 期待效果

現在 國內 建設市場은 外國 건설업체에 대해서 實質的으로 開放되어 있지 않으며 外國으로 부터 建設활동에 必要한 高級 엔지니어링기술의 導入도 크게 制約을 받고 있는 狀態에 있다. 國內건설시장의 開放現況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인이 國內건설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建設業法上 免許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면허기준중에서 기술자보유, 共濟組合出資 등은 外國인이 충족하기 곤란하므로 外國건설업자의 國內시장 진입은 實質的으로 불가능하다. 단, 外資導入法上 기존의 國內건설업면허 所持者 또는 許可業體와 合作하는 경우에는 外國人投資를 認可하고 있다. 그러나 外國인 持分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建設部協議를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外國인근로자 就業은 出入國管理法上 制限하고 있다. 셋째, 外國인이 國內기술용역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登錄이 필요하며 이 등록제도를 통하여 外國인의 國內市場 進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技術用役育成法上 國內엔지니어링 發注는 원칙적으로 國內엔지니어링업자를 主契約者로 하되 國內기술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外國용역발주가 가능하나 과학기술처의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國內 建設市場은 外國, 특히 선진국 建設업체의 競爭에 露出되어 있지 않으며 保護되고 있다. 現在 서비스에 대한 交易擴大 및 自由化를 위하여 多者間 서비스協商이 進行되고 있으나 國內 建設業界는 建設시장 개방과 建設서비스 交易 擴大에 대해서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國內 建設업체는 先進國 建設업체에 비하여 技術, 管理, 資金力 등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特히, 競爭力이 脆弱한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 分野에서 先進國業體들의 國內시장 支配를 憂慮하고 있다. 또한, 國內業界는 엔지니어링과 같이 기술습득, 인력개발의 效果가 큰 分野에서 國內業體들이 供給할 機會를 喪失하게 되면 國內 기술습득, 인력개발을 阻害하게 되는 問題를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過去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國內市場 保護는 기업의 기술습득, 인력개발을 促進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國內시장에 安住하려는 性向을 助

長시킬 可能性이 크다. 特히, 國內 建設市場은 政府規制의 人爲的 市場分割로 인하여 시장구조에 獨寡占的 要素가 存在하기 때문에 國內시장 보호는 國內 建設업체들로 하여금 獨寡占利潤의 追求에 主力하게 誘引하고 있다. 즉, 國內시장 보호가 기업의 기술습득, 인력개발을 促進시킨다는 保障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급속한 經濟成長 및 生活水準의 向上을 反映하여 高級化 多樣化되고 있는 建設需要 패턴의 變化에 國內 建設供給이 얼마나 彈力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나 이다. 일반적으로 공급측면에서 품질향상, 기술습득 또는 기술개발 등은 상당한 時間이 所要되기 때문에 現在 國內건설업체들은 기술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提供하기 어려운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建設서비스의 供給을 先進國에 依存하고 있다. 그러나 建設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고급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供給은 圓滑하지 못한 實情이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기술용역 육성법상 주계약제도 및 외국용역발주 승인제도는 國內 기술용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고급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막고 있으며 공급이 되는 경우에는 供給費用이 상승하고 使用者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건설업체들의 國內건설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은 結局 선진국이 保有하고 있는 고급 建設기술을 효율적으로 活用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선진국 建設업체들이 갖고 있는 高級技術만을 分離하여 공급받는 것이 有利할 것이라는 指摘이 있으나 여기에는 需要 및 供給 兩面에서 現實的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供給面에서는 최근 지적소유권의 강화, 부메랑효과에 대한 우려 등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 경향으로 인하여 선진국 기술공급자의 協商力이 기술사용자에 비해서 強化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만을 분리해서 導入하고자 할 때 공급자의 독과점력을 반영하여 그 費用은 크게 上昇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建設업체들의 國內시장 進入이 許容되면 그들이 保有하고 있는 고급기술의 潛在價格 (shadow price) 은 技術만을 分離하여 外部에 供給할 때의 가격보다 낮을 것이며 따라서 國內建設활동에 필요한 고급기술들은 보다 低廉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 需要面에서는 國內건설시장의 人爲的 分割로 인하여 독과점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건설업체들은 자유경쟁 상

태에 비해서 건설물 產出을 위한 高級技術 서비스의 投入을 줄이게 될 것이다.¹⁾

그러나 건설서비스 교역을 擴大하기 위하여 國內 건설시장을 開放할 경우에 當面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短期 産業構造調整이라고 할 수 있다. 建設에서 施工분야는 國內건설업체들이 競爭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건설업체들은 설계, 감리 등과 같은 技術集約的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 크게 進出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營爲하는 國內업체들의 규모가 대단히 零細하고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國內건설시장의 개방은 많은 영세 업체들의 倒産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國內에는 500개 이상의 기술용역업체가 있으며 建築士事務所는 3,000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零細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세업체들의 도산은 경제적 損失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國內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기업의 倒産과 함께 우려되는 문제는 失業의 增加이다. 그러나 國內실업의 증가는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건설분야중에서 기술, know-how 등을 利用하는 기술 또는 지식집약적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主로 供給할 것이며 따라서 核心기술 및 관리인력을 除外한 나머지 대부분은 國內人力을 雇傭할 것이기 때문이다.²⁾

이러한 단기 산업구조조정 費用에도 불구하고 國內 건설시장의 開放 및 건설서비스의 교역 擴大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利益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供給되는 건설서비스의 質의 向上을 통하여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건설수요를 원활하게 충족시키며 使用者 利益의 提高를 圖謀할 수 있다. 둘째, 海外 建設市場의 進出을 촉진시키고 기술습득, 인력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國內 建設産業의 國際化를 통하여 長期的으로 建設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과 같은 動態的 利益을 기대할 수 있다.

1) 제3장의(도표Ⅲ-1)에서 獨占과 競爭狀態의 경우에 品質改善의 選擇에 관하여 說明하고 있다.

2) 그러나 임금수준이 낮은 개도국의 단순인력이 國內건설공사에 투입된다면 건설부문에서 國內실업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1. 使用者 利益

국내건설시장 개방으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肯定的 效果는 發注者 利益이다. 국내건설시장은 政府의 건설업에 대한 過多 規制로 인하여 潛在力이 큰 新規 건설업체의 진입이 제한되고 대규모 건설업체들은 市場分割, 談合行爲 등을 통하여 利潤을 추구하는 獨寡占 要素들이 存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독과점력을 갖게 되면 自由競爭상태에 비해서 供給은 감소하고 價格은 상승하게 되는데 價格이 限界生産費用을 超過하게 되므로 독과점공급자는 초과이윤을 取할 수 있으나 使用者는 損失을 負擔하게 된다. 물론 독과점상태가 경쟁상태보다 優越한 경우도 있다. 規模의 經濟가 크게 作用하면 獨寡占下에서 생산비용은 하락할 것이다. 또한 Schumpeter 假說에 따르면, 독과점이윤의 존재는 위험부담이 높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效果도 있다. 그러나 국내건설업의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거나 독과점이윤이 기술습득 또는 기술개발을 촉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건설시장의 독과점상태는 국내건설업자들이 제공하는 건설서비스의 價格上昇과 品質低下를 招來하며 따라서 발주자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特히, 建設은 持續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必要 不可缺한 민간자본 및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서비스의 價格 상승과 品質저하는 산업 全般에 걸쳐서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며 그 影響은 장기간 持續될 것이다.

국내건설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손실을 제거할 수 있는 效果的인 方案은 외국건설업자들에게 국내건설시장의 진입을 허용하고 국내시장을 경쟁체제로 轉換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건설시장의 開放에 따라서 기대되는 건설서비스의 價格하락 및 品質향상의 정도는 計量的으로 推定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本分析에서는 단지 資本서비스중에서 建設物의 서비스가 차지하는 比重을 推定하는 間接的 方法에 의해서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따르는 사용자이익을 判斷하고자 한다. 즉, 過去 장기간에 걸친 投資에 의해서 形成된 stock으로서 건설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現在 資本서비스라는 생산요소에서 얼마큼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추정함으로써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기대되는 건설서비스의 價格하락

및 品質向上이 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推定하고자 하는 것이다.

建設은 經濟活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건설업은 1989년도 13조 8,081억원에 達하는 附加價値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국내총생산 142조 2,668억원의 9.7%에 이르고 있다. 産業聯關表에 나타나 있는 총 산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건설업은 1987년도 18조 3,063 억원을 산출하였으며 전산업 총산출액 252조 6,983 억원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활동에 의해서 產出된 多樣한 建設物들의 特徵은 첫째, 耐久年數가 長期이며 둘째, 그 用途는 주로 민간고정자본 및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에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銀行의 1987年度 産業聯關分析에 따르면 건설수요중에서 中間財의 性格을 갖고 있는 中間需要의 比率는 全體의 11.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고정자본형성을 위한 건설수요의 비중은 43.9% 그리고 정부 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수요의 비중은 91.6%에 達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의 경우는 중간수요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조업 또는 餘他 서비스업에 비해서 前方聯關效果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³⁾

건설서비스는 중간재보다는 資本財로서의 役割이 중요하다.⁴⁾ 建設活動으로 부터 산출되는 多樣한 建設物들은 固定資本形成에서 큰 比重을 차지한다. 國民計定에서 總 固定資本形成은 國內總生産에 대한 중요한 支出項目이 되고 있다. 총 고정자본형성은 크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기타구축물, 토지개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기계류, 낙농축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V-1) 은 1984-1989 기간중 건설투자가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建設物들은 機械, 施設과 같은 餘他 자본재에 비해서 내용년수가 장기이기 때문에 국내건설시장 개방의 결과로 건설물의 품질 또는 機能이 고급화되고 효율

3) 전망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感應度係數를 보면 1987년도에 건축 및 건설보수는 0.90, 토목 및 기타건설은 0.56으로서 1보다 작으며 이는 건설의 전망연관효과가 산업 平均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도소매업의 감응도 계수는 2.55, 금융 및 보험 1.72, 운수 및 보관 1.34, 사업서비스 1.3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流通, 金融, 運送, 事業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는 餘他 서비스 또는 財貨의 산출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서의 役割이 重要하다.

적으로 改善된다면 이것이 전체 경제활동에 미치는 肯定的 波及效果는 장기간에 걸쳐서 發生하게 될 것이다.

<表 V-1> 總固定資本形成中 建設投資의 比重

(단위: 10억원, %)

	총고정자본형성 (A)	건설투자 (B)	B/A
1984	20,998.1	12,287.0	58.5
1985	22,836.6	13,116.8	57.4
1986	25,993.4	13,535.6	52.1
1987	31,131.3	16,012.5	51.4
1988	37,354.5	19,882.9	53.2
1989	44,778.2	25,700.4	57.4

주: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기타구축물, 토지개량등을 포함하고 있음.
1989년은 잠정수치임.

자료: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 4.

총 고정자본형성중 건설물의 비중은 50% 를 上廻하고 있으며 이 건설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화 및 서비스를 산출하는데 資本財라는 生産要素로서 투입된다. (표 V-2) 는 1984-1989 기간중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固定資本消耗中에서 資本財로 투입되는 건설물의 서비스에 대한 統計가 區分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推定하는 것이 必要하다.

국내총생산중 고정자본소모액은 약 10% 에 達하고 있다. 國民計定에서 고정자본소모는 1년동안 生産過程에서 消耗된 有形固定資產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費用으로서 總生産(附加價値)의 일부를 구성한다. 고정자본소모를 계산하는 자본재의 범위는 총 고정자본형성의 대상물과 同一하며 총 고정자본형성의 대상물중에서 건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50% 를 상회하고 있다. 固定資本消耗額은 資本 stock과 耐久年數에 의해서 決定될 것이다. 자본 stock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내구년수가 짧으면 짧을

<表 V-2>

國內總生產中 固定資本消耗의 比重

(단위: 10억원, %)

	국내총생산 (A)	고정자본소모 (B)	B/A
1984	72,644.3	6,862.2	9.4
1985	80,846.9	7,926.0	9.8
1986	93,425.8	9,031.6	9.7
1987	108,428.3	11,034.1	10.2
1988	127,962.7	13,231.0	10.3
1989	142,266.8	14,667.0	10.3

주: 1989년은 잠정수치임.

자료: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0. 4.

수록 고정자본소모액은 增加할 것이다. 건설물의 耐久年數는 機械, 裝備와 같은 자본재에 비해서 長期이므로 同一기간중 건설물에 대한 減加償却率은 기계, 장비 등에 대한 減加償却率보다 낮다. 더욱이 기계, 장비 등은 급속한 기술발전의 結果로 經濟的 耐用年數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물은 내용년수가 장기이기 때문에 그 stock은 기계, 장비와 같은 餘他 자본재의 stock 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건설물 및 施設財의 자본서비스를 推定하기 위하여는 耐久年數뿐만 아니라 자본 stock의 規模를 고려하여야 된다.

건설물이 제공하는 자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推定할 수 있다. 每年 총 고정자본형성 중에서 건설투자와 시설투자를 同一한 比率로 한다고 하고 건설물의 내용년수는 시설물의 내용년수의 5배라고 하자. 매년 총 투자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일정시점에서 건설물 stock은 시설물 stock의 5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건설물에 대한 감가상각규모는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규모와 同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총 투자액이 증가한다고 하면 건설물 stock은 시설물 stock의 5배가 되지 못할 것이다. 건설물 stock과 시설물 stock을 推定하기 위하여는 총 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과 건설물 및 시설물의 내용년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우선, 건설물의 내용년수는 평균 50년, 시설물의 내용년수는 평균 10년이라고 가

정한다. 다음에 國民計定上 총 고정자본형성액은 1970-1989 기간중 1980년 不變價格을 基準으로 할 때 1970년 3조 7,718억원에서 1989년 39조 2,814억원으로 10.4배 증가하였다. 이는 每年 平均 약 13%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同기간중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은 50%를 다소 上廻하고 있다. 이상의 추정을 根據로 하여 건설물 stock과 시설물 stock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現在 건설물 stock은 시설물 stock의 약 1.4배 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그런데 건설물의 내용년수는 시설물 내용년수의 1/5 이므로 건설물에 該當하는 고정자본소모액은 전체 고정자본소모액의 약 2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잠정 추계한 1989년도 고정자본소모액 14조 6,670억원 (경상가격) 중에서 건설물에 해당하는 고정자본소모액은 22%에 이르는 약 3조 2,267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GDP의 약 2.3%에 達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고정자본 소모액중에서 건설물이 차지하는 부분을 推定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하는 變數는 총 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 그리고 건설물 및 시설물의 내용년수이다. 이변수들의 變動은 건설물이 提供하는 고정자본소모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V-3) 은 총 고정자본형성의 증가율 및 내용년수의 변동에 수반하는 건설물 고정자본소모액 비율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表 V-3> 總固定資本形成 增加率 및 耐用年數 變動과 建設物 固定資本消耗 變動

	13%	11%	9%
10년	1.4배 22%	1.54배 23.5%	1.7배 25.4%
8년	1.6배 20.4%		
6년	1.9배 18.6%		

주: 10년, 8년, 6년은 시설물의 내용년수이며 건설물의 내용년수는 50년임.

1.4배 등은 시설물 stock에 대한 건설물 stock의 비율임.

22% 등은 건설물에 해당되는 고정자본소모액 비율임.

다른條件은 일정하고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하락하면 건설물 stock의 비중은 시설물 stock에 비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건설물이 提供하는 서비스의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다른 條件은 不變이고, 機械, 裝備와 같은 시설물들의 내용년수가 기술발전 등의 理由로 인하여 건설물의 내용년수보다 漸漸 더 짧아진다고 하면 건설물 stock의 相對的 比重은 증가되나 건설물이 提供하는 서비스의 비율은 하락할 것이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건설물 stock의 상대적 비중 증가를 凌駕하기 때문이다. 급속하게 進展되고 있는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機械, 裝備와 같은 시설물들의 내용년수는 건설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 豫想되며 이에 따라서 고정자본소모액 중에서 건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건설물들이 제공하는 資本서비스는 전체의 20% 內外에 이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정자본소모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자본재로서 건설물의 중요성은 큰 것이다. 예컨대, 국내 건설시장의 開放에 따라서 건설서비스의 가격이 10% 下落한다면, 또는 건설서비스의 品質이 10% 向上된다면 이는 資本서비스 費用의 약 2%를 切感하는 效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발주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건설시장 개방의 效果는 施設資金에 대한 金利를 2% 引下하는 것과 同一하다는 뜻이다.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하고 선진국 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許容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利益은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기술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건설물들의 품질향상을 이룩하여 고급화 多樣化 趨勢에 있는 국내건설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재로서 건설서비스의 중요성은 全體 資本서비스의 약 20% 內外에 이르고 있으며 자본재로서 고도의 기술집약적 건설물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수요자의 선택의 機會를 확대시키고 사용자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緊要하다고 볼 수 있다.

2. 海外市場 進出 擴大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重要한 效果는 國內建設企業체들의 海外市場 진출이 擴大될 수 있다는 것이다. 國內建設시장의 개방은 海外建設시장의 개방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海外建設市場이 開放된다고 해도 韓國建設수출이 크게 增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見解도 있다. 韓國建設수출의 主市場이 되고 있는 中東 및 東南亞에는 市場개방과 關係없이 國內建設企業체들이 이미 進出하여 있으며 반면에 美國, 日本, EC와 같은 선진국의 建設市場은 개방이 된다고 해도 國內建設企業체들의 競爭力이 脆弱하기 때문에 진출을 擴大할 餘地가 크지 않다는 論理이다. 그러나 이 論理에서 看過하고 있는 것은 比較優位理論이 示唆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韓國建設企業체들이 日本建設企業체들보다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絶對적으로 競爭力이 뒤떨어진다고 해도 韓國과 日本의 建設市場이 개방된다면 相對적으로 競爭力이 덜 劣位에 있는 分野는 韓國建設企業체들이 蠶食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日本建設企業체들은 상대적으로 競爭力이 강한 분야에 主力하는 것이 利潤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國內建設시장의 開放은 國內建設企業체들의 海外市場 進出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國內建設企業체, 특히 대형建設企業체들은 市場분할, 談合行爲 등을 통하여 國內市場을 容易하게 確保하여 왔으나 外國建設企業체들의 國內市場 進入이 허용되면 이들과의 競爭이 深化될 것이며 國內建設企業체들은 比較優位가 있는 分野에서 市場확대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에따라 海外市場 진출에 보다 積極的인 노력을 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現在 建設부분에서 海外수요의 비중은 약 10% 정도이며 韓國建設수출이 海外建設市場에서 차지하고 있는 市場점유율은 약 1.5% 정도이다. 그러나 韓國의 中東建設 수출이 絶頂에 達했던 1980년대초에 海外수요비중은 60-70%에 이르렀으며 海外建設市場에서 韓國의 점유율은 10%를 上廻하였다. 韓國建設企業체들의 海外市場 진출 경험과 이를 통하여 蓄積한 技術, know-how 등을 考慮할 때 海外市場을 擴大할 수 있는 可能性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國內建設시장의 개방을 契機로 國內建設企業체와 外國建設企業체간에 다양한 형태의 提携가 擴大될 展望이며 이는

제3國 進出, 특히 최근에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국가와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진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3. 品質向上과 後方聯關效果

국내건설시장의 開放과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進入 許容 그리고 海外 建設시장 進出의 擴大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국내건설업체들이 供給하는 건설물의 品質이 提高되는 것이며 보다 重要的 것은 間接的效果로서 국내공급의 品質향상에 수반하는 技術習得, 技術開發, 人力開發 등과 같은 後方 聯關效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短期的으로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건설업체들의 진입으로 인하여 국내건설업체들의 市場占有率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즉, 국내공급의 量的減少가 豫想된다. 그러나 長期的 觀點에서 看過해서는 안될 重要的 효과는 국내건설업체들이 제공하는 건설물들의 品質이 크게 向上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주금액별, 공종별, 지역별 등으로 分割된 국내건설시장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은 安住하여 왔으며 특히 대형건설업체들의 談合行爲, 不公正한 受注慣行 등은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국내건설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데 逆作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국내건설업체들의 安易한 經營方式에 刺戟이 될 것이며 그들이 공급하는 건설물의 質을 改善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국내시장에 진입한 외국건설업체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내건설업체들은 淘汰되지 않기 위하여 생산성 및 경영효율을 提高시켜야 될 것이며 선진국건설업체들과의 提携 등을 통한 고급기술의 도입이 促進될 것이다.

국내건설시장의 개방과 이에 수반하는 건설물의 品質향상이 건설물의 사용자에게 얼마큼 큰 利益을 提供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檢討하였다. 그러나 건설물의 品質향상은 발주자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점차로 건설물들은 大型化,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인력을 이용한 施工은 중요성이 감소되고 설계, 감리, 計劃, 管理 등의 高度의 기술 및 know-how 가 건설물 산출에서 比重이 큰 工程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물의 品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내건설업체들의 努力은 건설공급에 관련된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 등을 促進시킬 것이다. 특히 국내건설

시장을 개방할 때 선진국건설업체들은 국내건설업체들과 合作投資, 技術提携 등의 形態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單獨으로 진출할 경우에도 核心技術 및 管理人力을 제외한 대부분은 국내인력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양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기술, 지식, know-how 등은 인적자본에 體化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인력과 함께 이동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내건설시장 개방은 외국건설업체와 국내건설업체간에 인력의 相互交流를 촉진하고 국내건설업체들이 기술습득을 하는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4. 要約

국내건설시장 開放에 수반하는 得失의 輕重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시장 개방으로 부터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될 것이다. 첫째,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資源의 效率의 配分을 기대할 수 있다. 量的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質的으로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있는 국내 건설수요를 국내공급만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限定된 資源의 배분면에서 非效率의이며, 또한 變動이 深한 建設需要의 特性을 考慮할 때 국내건설공급이 국내수요에만 의존하는 것은 危險의 分散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국내건설시장 개방으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使用者利益이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국내건설공급의 감소와 실업의 증가이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相對的 得失을 計量的으로 推定하는 것은 容易하지 않다. 그러나 부정적효과에 대해서 두가지 점이 指摘될 수 있다. 우선, 量的으로는 국내건설공급이 감소하겠으나 건설시장개방에 수반하여 看過해서는 안 될 중요한 효과는 국내건설공급이 質的으로 크게 向上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외국건설업체들은 핵심 기술 및 관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중 대부분은 국내인력을 고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실업의 증가는 우려할 만큼 크지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국내건설시장의 開放으로 인하여 고급기술집약적 건설서비스, 예컨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供給中 大部分이 외국업체들에게 蠶食당하게 되면 국내업체들은 기술집약적 건설서비스를 供給할 수 있는 機會를 잃

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험을 통한 技術習得을 할 수 없게 된다는 憂慮가 제기되고 있다. 즉, 競爭力이 脆弱하거나 比較劣位에 있다고 해도 기술습득, 인력개발 등의 외부효과가 큰 分野는 國內需要를 외국에 依存하는 것보다는 國內企業들이 供給하도록 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뜻이다. 이는 幼稚産業保護의 論理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國際競爭으로 부터 國內産業을 保護하고 국내공급자들에게 國內市場을 確保하여 주는 것이 기술습득 또는 인력개발을 促進시키는데 얼마나 效果的인가. 과거 經驗으로 미루어 볼 때 유치산업 보호는 기술개발 또는 기술진보의 효과보다는 보호장벽 아래에서 安住하려는 傾向을 助長시킨다. 또한 국내시장의 보호는 독과점이윤을 발생시키며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努力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기술습득의 효과가 크게 派生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국내시장 개방을 통하여 消費者選擇의 機會를 擴大시키는 것은 국내공급자들로 하여금 기술습득 또는 기술개발 努力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건설업체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專門化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시장확대를 圖謀하는 것이 인력개발,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民間建設業體들의 기술개발 努力을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선진국 건설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制限하는 方法보다는 進入障壁을 제거하고 有效競爭을 촉진시키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할 수 있다.



VI. 韓國建設產業의 國際化 推進 課題

經濟活動에서 建設이 차지하고 있는 重要度を 考慮할 때 韓國建設業界의 競爭力 提高 및 技術向上을 통하여 供給되는 建設物의 品質을 높히는 것은 시급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GDP에서 建設의 比重은 8-9%에 이르고 있으며 建設業 雇傭者는 總就業者의 약 6%를 占하고 있다. 한편, 社會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民間고정자본의 形成에서 建設의 比重은 50%以上이 되고 있으며 工場, 事務所, 構築物, 도로, 항만, 공항 등 다양한 建設物들이 提供하는 서비스는 總 資本서비스의 約 20%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된다. 이처럼 財貨 및 서비스의 產出에 投入되는 生産요소 중에서 建設物이 제공하는 資本서비스는 매우 重要的 역할을 한다. 또한 建設物의 耐久年數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影響은 오랫동안 持續된다.

最近 建設需要는 量的으로 增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經濟成長과 生活水準의 向上과 함께 급속히 高級化 多樣化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建設수요 패턴의 變化에 國內供給은 效率的으로 對應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제까지 國內建設業體들은 外國건설업체와의 경쟁에 露出되지 않고 保護되어 왔으며 國內시장에 安住하여 왔다. 물론 國內技術 不足으로 인하여 공급되기 어려운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建設엔지니어링 서비스는 先進國 業體에 供給을 依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國內 기술용역업체의 보호 育성을 目的으로 크게 制限을 하고 있다. 現在 進行되고 있는 UR 서비스協商과 관련하여 國內 建設시장을 開放하는 問題에 대해서 國內業界는 특히 建設부문 중에서 競爭力이 가장 脆弱하며 기술습득, 인력개발의 效果가 큰 建設엔지니어링 分野에서 國內업체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供給할 기회를 喪失하게 되면 國內기술습득, 인력개발이 萎縮되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過去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國內시장 보호는 企業의 기술습득, 인력개발 努力을 保障하여 주지 못한다. 특히, 國內 建設시장은 정부규제에 따르는 人爲的 市場分割, 大規模 建設업체들간에 談合行爲 등으로 인하여 市場구조에 獨寡占的 要素가 많기 때문에 國內시장 보호는 國內 建

설업체들이 독과점이윤의 추구에 注力하도록 誘引하고 있다. 實際로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진출을 기피하고 相對적으로 위험부담이 낮고 수익성이 높은 국내시장의 確保에 注力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國際競爭力 提高에 소홀히 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서 外國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蠶食이 우려되고 있으나 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建設의 重要度 및 國內建設需要의 고급화 다양화 趨勢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 보호보다는 오히려 보다 自由로운 交易를 통하여 先進國이 保有하고 있는 高級 建設技術 서비스를 活用하는 것이 使用者인 聯關産業의 利益을 增進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先進國 建設技術의 利用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을 促進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韓國建設業體들이 中東建設市場의 진출을 통하여 얻은 貴重한 經驗이다.

따라서 韓國建設産業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效果的인 方案으로서는 消極的인 국내시장 보호보다는 積極的인 國際化의 推進이 要求되고 있다. 국제화를 이룩하고 선진국의 기업 및 소비자들과의 接觸과 交流를 통하여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을 圖謀하기 위하여는 우선, 國內建設市場의 積極적 開放이 緊要하다. 둘째, 국내건설시장의 開放에 수반하여 公正한 競爭을 촉진하고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國內規制의 整備 및 改善이 必要하다. 셋째,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效果的인 産業構造調整 方案이 要望된다.

1. 國內建設市場의 開放

韓國建設産業의 國際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시장의 開放 및 UR協商에서 한국의 積極的 役割이 要求되고 있다. 국내건설시장의 개방과 關聯하여 分野別 開放順序 또는 開放日程은 시급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다. 첫째, 現在 進行되고 있는 UR 서비스協商은 結局 交易相對國과의 雙務的 讓許交換 協商의 過程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양허교환 협상 준비를 위하여 건설부에서 分野別 開放日程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건설의 분야별 개방일정을 豫示함으로써 국내건설업체들의 事前 對備

를 誘導하며 국내 건설산업의 國際化를 촉진시키는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의 分野別 開放順序는 單純施工 - 高級施工, 單純建設엔지니어링 - 高級建設 엔지니어링, 建設管理 順으로 競爭力에 立脚한 段階的 개방을 暫定的으로 計劃하고 있다. 즉,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조기에 개방하고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개방시기를 늦춘다는 戰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단계적인 개방을 計劃하는 理由는 건설서비스 교역을 漸進的으로 自由化하기 위한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서 국내업체들의 大量 倒産을 막고 이들이 競爭力을 갖추는데 必要한 時間을 提供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구조 調整에 따르는 費用을 최소화하는 方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건설시장을 분야별로 競爭力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의 問題는 交易의 利益을 충분히 活用할 수 없다는 점이다. 建設分野 中에서 競爭力이 脆弱한 엔지니어링 분야의 開放을 늦춘다면 建設需要의 고급화 다양화 趨勢에 따라서 급속히 增加하고 있는 高級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需要를 圓滑하게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르는 使用者 損失은 대단히 클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링 분야의 開放 遲延은 국내건설업체들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施工分野에서 海外市場의 開放을 기대하기 어려운 結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허교 환 협상의 상대국, 예컨대 미국, 일본 또는 EC 등은 한국이 조기에 개방 하고자 하는 施工부문보다는 한국이 개방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더 큰 商業的 價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韓國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개방을 지연하면서 선진국의 시공분야가 개방되기를 기대할 수 는 없을 것이다.

結局 건설서비스의 교역자유화가 韓國建設業 및 韓國經濟에 利益이 되기 어렵다면 上記 분야별 단계적 개방과 같은 防禦的이며 消極的인 戰略이 尙當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외국 建設업체의 국내시장 蠶食 또는 支配에 따르는 危險負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觀點에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및 建設서비스의 교역확대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肯定的인 波及效果, 즉 사용자이익, 해외시장진출 확대, 국제화를 통한 기술 습득 및 인력양성효과 등은 韓國건설산업의 발전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國內건설업체의 國際化 促進 및 競爭力 提高라는 장기적 利益의 追求를 위하여 시장개방에 따르는 단기적 國內供給의 減少라는 위험은 부담하는 것이 有利할 것이다. 따라서 施工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도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건설서비스 교역의 實質的 自由化에 寄與하고 한국건설업의 國際화를 촉진하며 聯關産業의 發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韓國은 건설서비스의 교역자유화를 위하여 UR서비스協商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緊要하다.

2. 建設産業 關聯規制의 改善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에 對備하여 時急히 取해야 할 措置는 國內市場에서 有效競爭을 촉진하기 위하여 建設産業에 關聯되는 規制들을 改善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政策的 目標 예컨대, 過當競爭의 방지, 專門化誘導, 中小建設業體 保護 育成, 地方建設業體 保護 育成 등을 위하여 건설활동에 대하여 많은 規制들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 規制들은 국내건설시장에서 有效競爭 (effective competition)을 阻害함으로써 국내건설업체들의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逆作用을 하고 있다. 特히, 市場分割을 結果하는 규제들을 제거시키지 못한 狀態에서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許容하게 되면 이들 外國業體들도 談合行爲, 不公正行爲 등을 통하여 독과점이윤 獲得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국내건설시장이 인위적으로 분할된 상태에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實質的인 開放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외국건설업체에 대해서 국내건설시장 진입을 許容한다고 해도 개방에 따르는 利點 즉, 品質改善 및 使用者 利益, 技術習得 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具體的으로 改善이 必要한 規制措置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內建設 免許制度는 건설산업의 專門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대단히 細分化된, 즉 26個의 업종별 個別免許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건설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擴大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개방에 따라서 海外건설 시장과의 統合이 深化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專門化는 經濟的 動機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效率的이며 人爲的 專門化는 市場을 分割시키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에 不必要할 것이다.

둘째, 建設業法은 專門系列化를 誘導하기 위하여 下都給을 義務化하고 있으나 전문계열화도 市場機能에 의해서 形成되도록 하는 것이 效率的이며 政府規制는 大型建設業體의 下都給者에 대한 不公正行爲를 防止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下都給制度는 건설공급에 따르는 危險을 分散시키기 위한 建設業體들의 經濟的 動機에 의해서 生成된 것이므로 이를 人爲的으로 強制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建設業法은 過當競爭의 防止 및 施工質의 확보를 目的으로 建設업체의 공사실적, 經營상태 등을 考慮하여 1件 公사의 受注上限額을 制限하는 都給限度制度를 採擇하고 있으나 도급한도제도는 공사규모별로 소위 말하는 移動障壁(mobility barrier)을 結果하고 있으며 이는 既存 大型建設業體에게 有利하나 잠재력이 큰 新設建設업체의 成長에는 不利하므로 有效競爭을 制限하고 있다. 特히, 外國의 大型建設업체들이 國內시장에 진출할 경우 이들의 해외공사 실적의 인정에 問題가 대두될 것인데 이를 不認定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外國의 대형建設업체들은 도급한도제도로 부터 큰 利得을 보게 될 것이다. 도급한도제도의 趣旨은 施工質의 확보에 있으나 얼마나 實效性이 있는지 不確實하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도급한도제도와 같은 間接的인 方法보다는 不實工事에 대한 制裁強化, 公事계약의 誠實履行 義務 強化 등과 같은 直接的인 方法이 보다 效果의일 것이다. 한편, 過當競爭은 일반적으로 需要가 供給에 比해서 相對的으로 不足할 때 發生하는 景氣變動的 現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總需要政策과 같은 巨視經濟政策에 의해서 對處되어야 할 것이며 過當競爭 現象을 政府規制에 의해서 防止하려는 것은 不合理하다.

네째, 建設業法은 中小建設業體의 育成을 目的으로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建設업체에 限하여 都給金額의 下限을 規制하는 都給下限額 制度를 導入하고 있으나 이 制度의 實效性은 크지 못하다. 중소建設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方案은 下都給 關係에서 대형建設업체의 횡포 또는 不公正行爲를 보다 嚴格하고 效果的으로 억제하는 裝置를 도입하고 대형建設업체들에게 지나치게 有利한 도급한도제도를 폐지하고 有效競爭을 促進시키는 것이다. 한편, 地方 建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실효성이 크지 못하며 오히려 建設시장을 地域的으로 分割하여 競爭을 制限하는 逆機能이 큰 地域制限制度도 閉止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政府工事의 入札方式의 改善이 要求된다. 특히, 조달청의 制限群制度는 대형건설업체들간에 談合을 助長하고 있으며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이 제한군제도에 參與를 요구할 때 爭點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改善이 必要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공사는 민간공사에 비해서 規模가 크고 발주자인 정부가 獨寡占力을 行使할 수 있으며 不正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설업자들이 公正하게 참여할 수 있는 機會를 제공하는 契約方式이 必要하다. 또한 정부공사 입찰방식의 개선은 한국건설업체들이 外國政府工事의 受注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技術用役育成法上 主契約制度和 외국용역發注 承認制度에 대한 檢討가 必要하다. 국내에서 발주되는 用役은 原則적으로 국내용역업자를 主契約者로 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주계약자제도가 國內 기술습득 및 기술개발의 促進을 위하여 얼마나 效果的인지 不確實하다. 특히, 최근에 知的所有權의 強化 趨勢에 따라서 선진국 기술공급자의 協商力이 技術使用者에 비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부터 용역을 도입할 때 주계약제도를 통하여 국내용역업자의 협상력을 提高시키는 데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주계약자제도로 인하여 국내 용역업체들은 주계약자라는 權利로 부터 發生하는 地代의 追求에 주력하고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은 소홀히 할 可能性이 크다. 地代의 發生은 結局 使用者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국내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용역을 외국용역업자로 부터 供給받을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의 承認을 要求하고 있는데 이 制度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정책의 意圖와는 달리 국내 기술용역업의 육성에 寄與하기 보다는 외국기술 도입에 대한 제한 및 使用者 負擔을 증대시키는 逆機能이 크다는 것이다.

일곱째, 建設의 特性은 先受注 後生産이기 때문에 品質의 不確實이 크며 따라서 需要者인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保護가 대단히 重要하므로 발주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關聯規制의 補完이 要求된다. 建設關聯規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需要者인 발주자에 대한 보호에 두고 있으나 국내규제는 발주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未洽한 面이 많다. 발주자보호에 취약한 國內規制를 개선하지 않고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利潤追求를 하는 이들의 不公正行爲가 憂慮된다. 不實工事, 공사계약의 불성실한 이행 등 발주자에게 直接的으로 被害를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大型建設業體들의 談合과 같은 競爭制限行爲도 結局은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嚴格하게 規制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保有하고 있는 고급 건설기술 및 know-how 의 習得, 技術人力의 養成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施行되고 있는 技術資格制度의 改善이 필요하다. 技術資格制度는 技術人力의 資質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必要하나 技術士 또는 建築士와 같이 資格을 갖고 있는 技術人力의 保有를 免許條件으로 要求하는 것은 資格貸與行爲, 地代追求活動 등 副作用의 素地가 크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 한편, 國內 기술인력의 공급을 促進시킬 수 있는 보다 效果的인 方法은 기술자격제도를 선진국들과 調和시키고 자격증의 相互認定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진국들과 기술인력의 交流 및 接觸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기술습득의 機會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기술인력에 대한 해외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結局 기술인력의 국내공급이 擴大될 수 있을 것이다.

3. 海外建設市場 進出 促進

現在 國內建設業體들은 해외진출에 수반하는 위험을 부담하기 보다는 質的·量的으로 급격히 擴大되고 있는 국내시장 확보에 注力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어진 與件에서 利潤을 追求하며 위험부담을 回避하고자 하는 民間企業의 行態에 緣由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이들이 內部化 (internalization) 시킬수 없는 여러 가지 外部經濟效果 (external economy)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건설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現在 총 건설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不過한 해외건설수요를 擴大시키는 것은 變動의 幅이 큰 건설수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약 90%에 이르고 있는 국내 건설수요에 대한 依存을 줄이고 시장의 多變化를 圖謀함으로써 危險의 分散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해외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통하여 국내건설업체들의 專門化 誘導, 技術 및 know-how의 習得, 人力養成 등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은 국내건설업체들로 하여금 해외시장 진출

에 적극적인 姿勢를 取하도록 促進시키는 誘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건설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은 국내시장에서의 競爭을 深化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個別企業의 意思決定은 自體의 利潤과 危險負擔만을 고려할 뿐이며 해외진출로부터 派生되는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經濟全體의 입장에서 要求되는 것보다 해외진출에 消極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의 외부경제효과를 提高하며 해외건설을 促進시킬 수 있는 效果的인 方案의 講究가 要望된다.

첫째, 對內的으로 現在 新規發給이 중단되고 있는 海外建設 免許를 開放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당경쟁과 해외부실공사로 인한 對外信用의 損傷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면허의 발급중단을 통하여서 보다는 다른 合理的인 방법 예컨대, 면허기준의 調整 등으로 對處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면허의 발급을 再開하고 위험부담을 할 수 있는 진취적인 많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도록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건설시장의 多變化를 摸索하는 것이 必要하다. 韓國의 건설업체들은 海外受注의 90% 이상을 中東 및 東南亞 建設시장에 依存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地域的 偏重을 탈피하기 위하여 日本, 美國, EC 등 선진국 건설시장에 進出擴大를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그 規模가 美國을 능가하고 있는 日本 建設시장에 積極적 진출 試圖가 必要하다. 또한 선진국 건설업체들과의 提携를 통하여 최근에 經濟協力이 擴大되고 있는 朝鮮을 비롯하여 中國, 東歐圈國家들에 진출을 摸索할 必要가 있다.

셋째, 해외건설에 수반하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保險制度의 強化가 必要하며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가장 큰 隘路要因이 되고 있는 金融서비스 制度의 改善이 要求된다. 海外金融서비스를 좀 더 容易하게 利用할 수 있는 制度的 改善이 必要하다.

넷째,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人力의 國家間 移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가장 緊要한 要件이 될 것이므로 노동력 이동에 관한 UR協商에서 노동력이동의 자유화를 위하여 積極적 役割이 必要하다. 外國建設人力의 國內流入이 社會問題化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나 建設工事別로 限時的으로만 利用하는 것이며 外國人 不法滯留 問題는 事後管理의 強化 등의 방법을 통하여 對處할 수 있을 것이다.

4. 産業構造調整 方案

國內 건설시장의 開放 및 건설서비스의 交易 擴大는 使用者 利益, 해외 시장 진출 확대, 기술습득 및 인력양성 등 국내건설산업 및 聯關産業의 발전에 寄與할 수 있는 여러가지 波及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負擔해야 될 危險은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蠶食과 이에따라 發生되는 국내업체들의 倒産과 失業의 增加이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가장 경쟁력이 취약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零細하기 때문에 국내건설시장을 개방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憂慮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산업구조조정을 원만히 하는 課題는 韓國建設産業의 국제화를 成功으로 이룩하는데 關鍵이 될 것이며 따라서 效果의인 方案의 講究가 시급하게 要求되고 있다. 예컨대, 영세업체들의 統廢合에 대해서는 金融 또는 稅制上 지원을 하고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 진출하는 선진국 건설업체들은 核心技術 및 管理人力을 제외한 나머지 大部分의 인력은 국내에서 供給받을 것이기 때문에 國內失業의 增加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피해집단에 대한 補償, 再訓練 등의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대형건설업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不公正行爲 또는 非競爭의 營業行爲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를 防止하기 위한 對應策을 講究하는 것이 필요하다. 現在 국내건설시장은 不合理한 국내제도 및 慣行으로 인하여 대형건설업체들간에 談合 또는 不公正行爲가 빈번하게 發生하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러한 狀態에서 외국건설업체들이 국내시장에 進入하게 되면 이들도 利潤追求를 위하여 불공정행위를 恣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막기위한 事前 對備策이 緊要하게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不確實性에 對備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必要하다. 즉,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서비스의 供給이 豫想치 못할 정도로 急増할 때 이로 인한 국내건설산업의 被害를 救濟하기 위한 소위말하는 Safeguard 制度의 導入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는 상품과 相異하기 때문에 Safeguard 制度에서 서비스의 特性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商品交易의 經

우에 Safeguard 措置는 關稅引上, 數量制限 등 國境措置를 取할 수 있으나 建設서비스의 경우에 어떠한 方式으로 Safeguard 措置를 取해야 할 것인지는 解決해야될 課題이다. 또한 Safeguard 制度는 현재 UR서비스 協商에서도 論議가 되고 있기 때문에 國內제도를 多者間 合意된 제도와 調和시키는 과제도 대두될 것이다. 한편, 國內 Safeguard 制度에 대한 信賴度を 높이고 濫用防止를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과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獨立性的 保障이 필요할 것이다.

Ⅶ. 結 論

建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交易擴大 및 自由化는 韓國건설산업의 國際化를 圖謀하는데 좋은 機會를 提供하고 있다. 1970年代 중반이후 韓國의 많은 건설업체들은 높은 危險負擔에도 불구하고 中東건설시장에 積極的으로 進出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先進技術의 습득, 人力의 양성, 施工經驗의 축적이라는 귀중한 成果를 거두었다. 이것은 한국건설산업의 成長 및 發展에 큰 貢獻을 하였다. 그러나 最近 國內 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消極的이며 국내시장의 確保에 注力하고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는 국내 建設景氣가 需要의 急增으로 好況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해외건설시장은 競爭이 深化되고 危險負擔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安易하게 국내시장에만 安住하려는 건설업체들의 消極的인 자세는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提高 努力에 逆機能을 하게 될 것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體質改善을 促進시키며 이들이 進取的으로 해외시장을 開拓하고 선진국 건설업체 및 발주자들과의 接觸과 交流를 통하여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을 圖謀할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하는 것이 要求되고 있다.

한편, 現在 막바지 段階에 있는 Uruguay Round 多者間 서비스協商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交易 확대와 自由화를 위하여 韓國의 積極的 役割이 要望된다. 특히, 韓國을 비롯하여 많은 開途國들이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施工分野에서 先進國 건설시장 진출은 人力移動에 대한 制限, 閉鎖的인 慣行 등 障礙要因으로 인하여 많은 制約을 받고 있는 實情이므로 多者間協商을 통하여 이러한 장애요인의 除去가 必要하다. 그 規模가 대단히 큰 先進國 建設市場이 開放된다면 90% 이상을 中東 및 東南亞市場에 의존하고 있는 韓國 海外建設의 地域的 偏重을 緩和하고 日本, 美國, EC 등 선진국시장 進出을 통하여 市場 多變化를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 건설업체들과의 提携가 促進되고 그들의 經驗 및 know-how 를 活用하여 朝鮮, 中國, 東歐圈國家들에 대한 效果的인 接近을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海外건설시장 진출 促進과 함께 要求되고 있는 것은 國內건설시장의 開放이다. 市場開放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效果는 使用者 利益의 提高라고 할 수 있다. 經濟活動에서 建設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대단히 크다. 社會間接資本 뿐만 아니라 民間固定資本의 形成에서 建設의 比重은 50% 이상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建設物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總 資本서비스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經濟 成長과 生活水準의 향상과 함께 建設需要는 量的으로 增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質의으로도 급속하게 高級化 多樣化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요패턴의 變化에 國內建設供給은 효율적으로 對應하지 못하는 實情이다. 따라서 國內 有效需要 (effective demand)가 外國建設業體에 漏出되는 것을 막고 國內건설업체에 의해서만 供給되도록 하기 위하여 國內 市場을 保護한다면 이로 인한 發注者 損失은 대단히 클 것이다. 반면에, 國內시장 개방을 통하여 선진국이 保有하고 있는 高級 建設서비스를 효율적으로 活用하면 발주자 이익은 크게 增進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장개방에 따라서 建設物의 品質이 10% 向上된다면 (또는 價格의 10% 下落) 이는 資本서비스 費用을 약 2% 切感할 것으로 推定된다. 마치 長期施設資金에 대한 金利를 2% 引下하는 것과 同一한 效果인 것이다.

國內건설시장의 개방으로 부터 기대되는 長期的 效果는 기술습득, 기술개발, 인력개발이 促進되는 動態的 利益이다. 國內건설시장과 해외건설시장의 統合이 深化되고 國內과 外國의 建設업체 및 발주자들 相互間에 접촉 및 교류 즉, 相互作用 (interaction)을 통하여 動態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장개방의 利益이 最大限 實現되기 위하여는 國內건설산업에 關聯되는 規制 및 制度의 整備 改善이 시급히 要求되고 있다. 첫째, 國內건설시장의 分割을 招來하고 이로 인하여 談合, 不公正行爲를 誘發하거나 有效競爭을 制限하는 規制들의 改善이 必要하다. 왜냐하면 國內시장이 人爲的으로 分割된 狀態에서 市場開放을 하게 되면 國內 진출한 外國건설업체들도 獨寡占利潤의 獲得을 追求할 것이며 따라서 개방에 따르는 利點 즉, 使用者利益, 品質改善, 技術習得 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發注者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의 補完이 要求된다. 不實工事, 공사계약의 不誠實 履行등을 嚴正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면 國內건설업체들 뿐만 아니라 外國업체들도

말주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세제, 國內外 大型建設業體들의 談合, 不公正行爲를 막기 위한 規制의 強化가 必要하다. 네제, 國內技術資格制度를 선진국의 제도와 調和시키는 方向으로 改善하는 것이 要望된다. 기술자격제도의 조화는 선진국 기술인력과의 交流 및 接觸을 促進시키고 기술습득의 機會를 확대시키며 나아가서 기술인력의 국내공급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結論으로 韓國의 建設産業이 技術 및 競爭力을 提高하고 이를 통하여 供給하는 建設物의 品質을 向上하기 위하여는 消極的인 국내시장의 보호보다는 積極的으로 국내시장을 開放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交易의 利點을 最大限 活用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물론 國際化의 推進에 따르는 危險負擔 및 不作用도 均衡있게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경쟁력이 脆弱한 中小業體의 倒産, 失業의 發生 등에 대한 산업구조조정 방안의 講究가 緊要하다. 그러나 交易의 擴大에 수반하는 위험부담이 과장되는 것은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利潤을 追求하는 개별기업들은 意思決定에서 外部經濟效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交易의 擴大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過大評價하는 傾向이 있다. 國內外 市場의 統合이 進展되고 이에 따라서 競爭이 深化되면 個別企業의 危險負擔은 커질 것이나 市場의 擴大와 競爭의 促進은 전문화, 기술촉진,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派生시킬 것이다. 經濟全體의으로는 交易의 增大로 부터 派生되는 이같은 다양한 動態的利益도 고려되어야 한다. 國際化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增大되는 個別企業의 위험부담도 均衡있게 고려되고 補完措置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이 위험부담 때문에 國際化의 推進이 遲延된다면 短見이 될 것이다.



< 參考文獻 >

「國內文獻」

- 經濟企劃院, 「建設業統計調查報告書」, 1988.
- ,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 , 「主要經濟指標」, 1989.
- , 對外經濟調整室, 國內서비스產業 參考資料, 1990.
- , 對外經濟調整室, 「서비스分野 自由化의 現狀과 國際比較에 관한 調査」, 政策參考資料, 1990.
- 國土開發研究院, 「우리나라의 建設產業構造」, 1989.
- 金秀勇, 「우루과이라운드協商과 建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政策研究資料 88-14, 韓國開發研究院, 1988.
- 金址鴻, 「建設業 競爭促進 政府規制 改善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0.
- 김홍수, 「UR/GNS 건설부문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國土開發研究院, 제 1차 UR/서비스협상 정책협의회 자료, 1990.
- 大韓建設協會, 「民間建設白書」, 1989.
- 沈義燮, 「韓國建設經濟論」, 眞成社, 1990.
- 李德俊, 「海外建設의 最近 現況과 發展方向」, 「海外建設」, 海外建設協會, 1990. 5.
- 河泰根, 吳東哲, 「우리經濟의 서비스化 現況」, 「調査統計月報」, 韓國銀行, 1990. 4.
- 韓國技術用役協會, 「엔지니어링분야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응방안」, 제 1차 UR/서비스협상 정책협의회 자료, 1990.
-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產業技術白書」, 1989.
- 韓國銀行, 「產業聯關表」, 1980, 1985, 1987.
- 海外建設協會, 「海外建設의 中期展望과 發展戰略」, 1989. 10.

<外國文獻>

日本 エンジニアリソゲ 振興協會, 「エンジニアリソゲ 産業 の 實態 と 動向」, 1988.

Bhagwati, Jagdish N., "Trade in Services and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September 1987.

Feketekuty, Geza,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88.

GATT, Press Release, March 14, 1990.

GATT, *GATT International Trade 1988-89, Volume I*, 1989.

Hill, T.P.,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No. 4, 1977.

OECD, *Trade in Services and Developing Countries*, 1989.

Seymour, Howard, *The Multi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Croom Helm, 1987.

Scherer, F.,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nd edition, Rand-McNally, 1980.

<著者略歷>

張 義 泰

- 1971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商學科 卒
1973 美國 일리노이주립대학 經濟學 碩士
1984 美國 위스컨신대학 經濟學 博士
1974~79 韓國開發金融(現 韓國長期信用銀行) 調査役
1984~ 慶熙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1990~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招請研究委員

政策研究 90-09

多者間 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建設產業의 國際化

1990年 10月 日 印刷

1990年 10月 日 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42, 해성빌딩 18-19층

電話 : 519-3333, 팩시밀리 : 519-3311, 3322

印 刷 (株)凡 信 社
